

# 국제 ODA 동향

(2009. 4)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선진국의 ODA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되었습니다.

<b>ODA 토픽</b>	[Page]
<input type="checkbox"/> <a href="#">DAC의 2001 언타이드 권고 이행현황 점검</a> ♦ '09년 점검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의 2001 권고 이행 현황 점검 및 시사점 정리	[2]
<input type="checkbox"/> <a href="#">원조 분업 논의를 위한 우리나라 원조 현황 자료</a> ♦ 원조 분업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 원조의 집중 국가·비교우위 분야 정리	[12]
<input type="checkbox"/> <a href="#">2008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a> ♦ '08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 내용 분석을 통해 무역관련 원조에 관한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시	[25]
<b>ODA 단신</b>	
<input type="checkbox"/> <a href="#">언타이드 원조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a> ♦ 언타이드 원조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정리	[38]
<input type="checkbox"/> <a href="#">OECD DAC 제14차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a> ♦ '09년 3월에 개최된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의 주요 결과 정리	[41]
<input type="checkbox"/> <a href="#">DAC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논의 동향</a> ♦ 개발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역설하는 DAC 지침서('08.12) 및 관련 논의 동향 요약	[48]
<input type="checkbox"/> <a href="#">2009 DAC 통계작업반(WP-STAT) 비공식회의 주요 내용</a> ♦ ODA 통계수집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통계작업반의 '09년 비공식 회의 주요 내용 정리	[53]
<b>ODA 자료</b>	
<input type="checkbox"/> <a href="#">DAC Peer Review Content Guide and Process</a> ♦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 방법 및 절차 분석	[56]
<input type="checkbox"/> <a href="#">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와 현황</a> ♦ 프랑스의 원조개혁 역사 및 ODA 운용체제, 원조동향 분석	[68]
<input type="checkbox"/> <a href="#">2008년 OECD DAC의 ODA통계(잠정치)의 주요내용</a> ♦ '09년 3월 OECD DAC가 발표한 ODA 통계(우리나라 포함) 내용 정리	[84]
<b>EDCF 소식</b>	
<input type="checkbox"/> <a href="#">2009년 1/4분기 EDCF 소식</a> ♦ '09년 1/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09년 3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89]

ODA 토픽 1

## DAC의 2001 언타이드 권고 이행현황 점검

### 【요약】

- 2009년 점검보고서는 원조의 비구속화관련 AAA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회원국들에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조의 구속화 유인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포함
- 2007년중 회원국의 권고이행관련, 최빈국/HIPC 뿐 아니라 양자간 원조 전체적으로 비구속화가 확대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회원국별 편차가 크며, 입찰결과 높은 공여국 수주율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음
- 원조의 비구속화관련 DAC 비공식회의 결과를 보면, 향후 원조의 비구속화는 프로젝트사업, 기술협력, 식량원조 등 실질적 구매활동이 수반되는 원조형태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1. 2009년 권고이행점검보고서의 주요 내용

- 예년의 점검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2001년 권고이행점검, 회원국 간 노력분담정도, 비구속화 원조 통계보고 및 통계보고의 투명성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2009년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아래 두 가지 주제를 논의에 추가
  - AAA에서 회원국 간 합의사항인 원조의 비구속화 진행점검
    - 회원국별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계획 수립
    - 구속성여부 통지실적 및 통지의 투명성 개선
  - 경제위기에 따른 원조의 구속화 유인을 모든 회원국들이 극복 하자는 제언

## 2. AAA 합의사항 이행 현황

### □ 비구속화 원조 확대 계획 수립 합의

- '09.4.7일 개최된 원조의 비구속화 관련 DAC 비공식 회의에 따르면 향후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는 프로젝트형 원조, 기술협력, 컨설팅, 식량원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이들 원조의 비구속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이해당사기관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국제조달시장이 존재\*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구속화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

\* 해당 재화·용역에 대한 국제조달시장의 존재여부 및 비구속화 추진 가능여부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례를 기준으로 원조종류를 구분해 보면,

- 비구속화가 가능한 원조 : 자본재, 자본투자, 프로젝트형 원조, 기술협력, 컨설팅, 식량원조
- 비구속화가 어려운 원조 : 연수생초청, 행정비, 공여국내 난민지원, 개발협력인식 프로그램

- 이를 고려하여 각 회원국들은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동 계획을 2009년 10월까지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DAC회의에서 논의
- 원조의 비구속화 관련 DAC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비구속화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접근방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회원국 의견 수렴 예정
  - 우선, "비구속화가 어려운 원조"를 최소화,
  - "비구속화가 가능한 원조"를 최대한 확대,
  - 남아있는 구속성 원조와 그 비율 최소화
- 원조의 비구속화 관련 DAC 비공식회의 논의결과는 4.21개최 예정인 DAC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6월말 개최 예정인 비공식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계획초안을 제출할 예정

□ 비구속화 원조 통지 및 투명성 개선

○ 기술협력을 포함한 원조의 구속성 여부 보고

- 2007년 CRS 기준 전체 ODA의 약 9% 정도가 구속성여부가 미통지된 상태\*이며, 이 중 상당부분이 기술협력인 바, 회원국들은 기술협력의 구속성 여부 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i) **DAC Table 7b<sup>1)</sup> 폐지**(기술협력의 구속성여부는 통지할 필요 없다는 DAC 통계지침도 삭제)

(ii) 그 대신 **기술협력의 구속성 여부는 CRS를 통해 보고**

\* 보고가 미진한 이유는 DAC통계지침상 기술협력의 구속성여부보고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 통계취합능력의 한계, 회원국의 높은 구속성 비율 은폐 의도 등으로 추정

- 구속성 여부 미통지 원조비중이 높은 회원국 : 그리스(75%), 포르투갈(56%), 스위스(54%), 프랑스(38%)

※ 기술협력의 구속성에 따른 회원국 분류

- 대부분 비구속성 :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대부분 구속성 : 미국, 오스트리아
- 대부분 미통지 :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

1) 회원국별 원조의 구속성 현황을 나타내는 DAC Table로서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양자간 원조를 대상으로 각 국의 구속성 현황을 표시

○ 비구속성 원조사업 사전 통지 개선 필요

- CRS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 가능한 비구속성 원조 사전통지 건수·금액과 DAC bulletin board<sup>2)</sup>에 통지된 실제 비구속성 사업건수·금액을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sup>3)</sup>하나,
- 그 차이(실제 사전 통지된 비구속성 원조사업 건수·금액이 CRS를 통해 추정되는 비구속성 사업건수·금액에 미달)가 매우 커서 회원국의 통지 이행 성실성에 의문 제기

<최근 3년간 비구속성 원조 사전통지 및 CRS통계치 비교>

Volume (USD million)

	2005		2006		2007	
	ex ante	CRS	ex ante	CRS	ex ante	CRS
Australia (1)	34	56	83	212	52	362
Austria	..	70	..	42	..	34
Belgium	559	317	907	329	413	474
Canada	19	327	3	386	16	731
Denmark	..	654	0	404	3	424
Finland	..	104	..	174	..	174
France	107	654	250	867	186	577
Germany	563	569	275	921	464	126
Greece	..	..	..	..	..	15
Ireland	..	154	..	181	..	188
Italy	..	182	..	53	..	127
Japan	732	1 732	334	1 101	1 175	1 880
Luxembourg	..	19	..	18	..	33
Netherlands (1)	0	820	..	1 214	0	956
New Zealand (1)	..	..	..	43	..	32
Norway	25	599	6	470	..	619
Portugal	1	55	..	47	..	72
Spain	10	240	30	..	8	118
Sweden (1)	..	518	..	678	..	364
Switzerland	13	74	..	100	..	88
United Kingdom (1)	555	1 776	318	2 365	..	1 610
United States (1)	3 198	1 706	2 239	3 166	328	3 954
<b>Total</b>	<b>5 815</b>	<b>10 624</b>	<b>4 444</b>	<b>12 772</b>	<b>2 645</b>	<b>12 958</b>

2)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2001, 2008개정)에 따르면, 권고사항 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DAC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사업(단 SDR700,000미만 사업 또는 SDR130,000미만의 IRTC 제외)을 입찰개시일 30일전에 DAC's Internet bulletin board(<http://webdomino1.oecd.org/comnet/dcd/untiedpubliccws.nsf>)에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 통지 내용은 통지국가/기관/연락처, 수원국, 사업개요, 사업부문/목적코드, 사업규모, 입찰기간, 구매방식 등임

3) CRS에 보고된 비구속성 원조사업은 여러개의 사업부문으로 분리 발주될 수 있고, 또한 승인이후 입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CRS 통계와 비구속성 원조 사전통지 통계는 일반적으로 일치 하지 않음

○ 수주사업 통지 개선 방안

- 수주사업정보관련, 사전 통지된 비구속성 원조사업 건수·금액을 수주 후 통지된 사업의 건수·금액과 일대일 mapping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 두 통계간 관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test area' (시범사업부문)를 발굴하여, 비구속성 원조의 사전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후 수반되는 수주사업 통지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자는 의견이 원조의 비구속화 관련 DAC 비공식회의('09.4.7)에서 제시

⇒ 상기 방안의 시범적 실시를 통해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구속성 원조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가능

### 3. 경제위기로 인한 원조의 구속화 유인 극복 필요

-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화 유인 극복 요청은 2008.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trade pledge" 및 이를 재확인한 2009. 4월 런던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강조된 보호무역주의 반대, 새로운 무역장벽 지양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4. 권고이행검토

□ 원조의 비구속화

- 2007년 중 DAC 회원국의 양자간 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75%, 구속성 원조 비율은 17%, 나머지 9%는 미보고
  - LDC에 대한 비구속화 뿐 아니라 총 양자간 원조의 비구속화 제고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회원국 간 큰 편차가 존재
  - 특히, 비구속성 비율이 DAC 평균(75%)보다 낮은 회원국 중 구속성 여부 미보고 비율이 높은 국가가 많음(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위스)

<DAC회원국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

(단위 : %)

회원국	전체 양자간 원조			기술협력			TC/ODA
	비구속	구속	미보고	비구속	구속	미보고	
호주	96	4		95	5		71
오스트리아	78	22		32	68		15
벨기에	96	4		100			46
캐나다	74	20	6	76	24		45
덴마크	89	4	6	2		98	7
핀란드	92	8		94	6		38
프랑스	53	9	38	16	10	75	37
독일	75	18	7	37	45	18	37
그리스	14	11	75	16		83	62
아일랜드	100			100			3
이탈리아	54	36	11			100	11
일본	80	4	16			100	15
룩셈부르크	100						
네덜란드	82	18		97	3		8
뉴질랜드	84	16		59	41		26
노르웨이	100			100			22
포르투갈	38	6	56	99	1		26
스페인	65	30	5	76	18	6	26
스웨덴	95		5			100	5
스위스	46		54	53		47	13
영국	100			100			25
미국	67	33		11	89		3
전체	75	17	9	50	20	31	20

○ DAC회원국들의 비구속화 확대 노력

- 네덜란드는 종전 구속성으로 운영하던 ORIO프로그램(Development related Infrastructure Facility)을 100% 비구속화
- 캐나다는 2008년 식량원조를 비구속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구속성 원조도 2013년까지 비구속화하기로 결정
- 스페인도 2010까지 식량원조를 비구속화하고, 기술협력을 포함한 나머지 구속성 원조도 2015년까지 비구속화 예정

□ 노력 분담(Effort sharing)

※ 노력 분담 지표(Reference Indicator Matrix)

- 최빈국앞 양자간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지표A) =

$$\frac{\text{최빈국앞 비구속성 양자간 원조액}}{\text{최빈국앞 양자간 원조 총액}} \text{ (목표비율 : 0.60)}$$

- 노력분담율(지표B) =

$$\frac{\text{최빈국앞 비구속성 양자간 원조액} + \text{최빈국앞 다자간 원조액}}{\text{GNI}} \text{ (목표비율 : 0.04)}$$

- 2007년 기준 회원국들의 RIM(Reference Indicator Matrix)은 대부분 권고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회원국별 상당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
  - 지표A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은 목표비율에 미달할 뿐 아니라, DAC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지표B의 경우, 모든 회원국이 목표비율을 초과하였으나, 포르투갈, 스위스는 2006년 대비 지표 감소



<DAC회원국의 RIM 현황>

	최빈국에 대한 양자 언타이드 비율 (1) (권고수준: 0.60)		노력분담지수 (2) (권고수준: 0.04)	
	1999-2001 연평균	2007	1999-2001 연평균	2007
호주	0.42	0.98	0.05	0.08
오스트리아	0.34	0.90	0.04	0.07
벨기에	0.49	1.00	0.08	0.21
캐나다	0.40	0.85	0.03	0.10
덴마크	0.77	0.88	0.28	0.28
핀란드	0.69	0.99	0.08	0.18
프랑스	0.54	0.54	0.06	0.09
독일	0.43	0.80	0.04	0.09
그리스	..	0.87	..	0.04
아일랜드	1.00	1.00	0.17	0.28
이태리	0.30	0.53	0.03	0.06
일본	0.76	0.86	0.05	0.06
룩셈부르크	..	1.00	..	0.34
네덜란드	0.86	0.99	0.22	0.24
뉴질랜드	..	0.81	..	0.08
노르웨이	0.99	1.00	0.30	0.34
포르투갈	0.42	0.91	0.11	0.09
스페인	0.25	0.76	0.02	0.07
스웨덴	0.69	0.97	0.18	0.25
스위스	0.84	0.39	0.09	0.07
영국	0.63	1.00	0.07	0.13
미국	0.01	0.75	0.01	0.05
<b>DAC 평균</b>	<b>0.55</b>	<b>0.84</b>	<b>0.04</b>	<b>0.08</b>

사전통지

○ 2008년중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의 사전통지 건수는 214건이며, 금액기준 37억불

- 2008년 사전통지 건수는 2005년이후의 연평균 건수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주사업 통지

○ 2007년부터 소규모사업(SDR700,000 미만, SDR130,000미만의 IRTC)에 대한 수주사업까지 통보됨에 따라 통지건수와 금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 전년기준으로 표준화할 경우, 통지건수는 감소(2006년, 624건→2007년 327건) 하였으며, 통지사업금액은 소폭 증가(2006년, 26억불→2007년 29억불)
- 수주사업의 지역별 배분을 보면, 약 2/3이상의 사업을 OECD회원국이 수주하였고, 이중 절대다수가 공여국 기업이 수주
  - 특히, 비구속성 원조규모가 큰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사업의 87%, 81%, 68%를 각각 공여국 기업이 수주
  - 60%가 넘는 공여국 수주율은 수원국 조달을 증진하자는 국제적 합의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통해 수원국 경제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자는 비구속화 권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최빈국 비구속성 사업 입찰결과>

(단위 : %)

회원국	공여국		타OECD국		개도국		최빈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호주	83	96			8	1	8	3
오스트리아								
벨기에	20	15			40	12	40	73
캐나다	100	100						
덴마크		100	17					
핀란드	100	100						
프랑스		16	11	34	48	38	17	11
독일	56	44	6	4	8	4	31	48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87		9				4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00	100						
뉴질랜드	86	87	14	13				
노르웨이					100	100		
포르투갈					100	100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81	88	7	5	7	4	4	3
미국	68	63	6	1	21	34	4	2
DAC 평균	61	60	7	6	20	28	11	6

## 5.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 DAC의 실질적·전면적 비구속화 추진 예상

- 일부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 중 상당부분이 직접적인 구매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원조형태인 채무구제, 예산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실질적 구속화 정도를 왜곡하고 있는 바,
- 금번 원조의 비구속화 관련 DAC 비공식회의('09.4.7)에서 향후 원조의 비구속화는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컨설팅, 식량원조 등 실질적 구매활동을 수반하는 원조형태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논의된 사실은 현행 비구속성 통계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실질적 비구속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 각 국의 원조의 비구속화 추진계획 수립

- AAA 합의에 따라 DAC회원국들은 원조의 비구속성 확대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5월초 개최 예정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단계적 비구속성 추진 계획이 수립될 예정

### □ 국내기업의 경쟁력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DAC회원국의 2007년 최빈국앞 비구속성 원조사업 수주결과에서 보듯이 공여국 수주율은 종전대비 더욱 증가(건수 41%→61%, 금액 48%→60%) 하였으며,
- 현재 DAC의 비구속화 논의추이를 볼 때, 기술협력으로까지 비구속화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우리나라도 현재 유치산업(幼稚産業)단계인 컨설팅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육성함으로써 원조사업에서 국내기업의 참여율을 높여 국가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노력이 요구됨

자 료 : Implementation of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Aid 2009 Review(2009.4)  
비구속성 원조관련 DAC 비공식회의 결과(2009.4)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mailto:danie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 원조 분업 논의를 위한 우리나라 원조 현황 자료

### 【요약】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핵심 이행과제 중 하나인 원조 분업은 원조의 중복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여국간 수원국 및 비교우위 분야를 분업을 통해 집중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는 비교적 원조 규모가 작은 신흥 공여국으로서, 원조 분업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 수원국 및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함
  - 우리나라는 예멘,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 비교적 원조가 집중되어 있으며, 통신, 교통, 공공부문 등의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적 원조 분업 논의 참여에 앞서, 우리나라 원조 기관간 조정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 1. 원조의 분산(Aid fragmentation)과 & 원조 분업(Division of labor)

- 다자기구·개발NGO 등 원조 공여기관 수의 급격한 증가 및 원조 중복에 따른 원조의 분산(Aid fragmentation) 심화
  - '05-'06년간 25개 이상 공여국의 원조를 받은 수원국은 38개국이며,
  - 15개 이상 공여국의 비중이 전체의 10% 미만인 수원국도 24개국에 이룸
- 최근 원조의 중복을 없애고 원조 집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여국간 원조 분업(Division of labor) 논의 활성화
  - 원조 분업은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AAA)의 핵심 이행과제 중 하나

○ 수원국내(In-country) 원조 분업

- 수원국내 많은 원조기관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중복된 원조 및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개념
- 수원국과 공여국간 합의 하에 Lead/Active/Silent donor를 선정하고, **Lead donor를 중심으로 원조 조율**
  - 각 공여국은 자신의 비교우위 국가·분야를 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라 최대한 다른 공여국에 협조해야 함

○ 공여국간(Cross-country) 원조 분업

- 일부 국가에 원조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다른 일부 국가는 '원조 고아(aid orphan)'로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원조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자는 논의
- AAA '즉시 이행 항목(Beginning now commitments)'의 하나로 '09. 6월 부터 원조분업관련 Global dialogue가 시작될 예정

□ 원조의 분산 및 원조 분업 논의 관련 쟁점사항

- 원조의 분산을 줄이기 위한 원조 분업 논의는 수원국내 많은 공여기관이 제각각의 집행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데 대한 비용을 줄이고, 수원국의 원조 집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 Lead donor 선정시 과거 공여 규모, 문화적 유사성(예, 언어) 및 과거 공여 역사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흥공여국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며, 수원국의 Development path에서 다양한 공여국의 경험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2. 우리나라의 원조 분산 현황

- DAC은 "Scaling up :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 보고서 발간을 통해 DAC 회원국 및 주요 다자기구의 원조 분산의 정도를 분석('05~'06 Country Programmable Aid\* 기준)

※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 국별 배분가능한 양자원조 중, 채무구제, 인도적 지원, 공여국내 비용 등을 제외한 수원국이 직접 활용 가능한 원조 금액을 말함. 프로그램·프로젝트 원조 및 기술협력(imputed student costs 제외)이 이에 해당

- 동 보고서 'Part 1. Aid Fragmentation and Concentration' 부분은 현재 각 공여국의 원조 집중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수원국에서 어떤 공여기관의 비중이 큰지 살펴보는 원조 분산 현황의 기초자료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어, 올해부터 본격화될 원조 분업 논의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
- 아래에서는 동 보고서의 분석틀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원조의 분산 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DAC 차원의 원조 분업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 가.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집중 정도<sup>4)</sup>

□ 우리나라는 전 세계 CPA의 약 **0.4%**를 차지하여, 전 세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Global share)이 **매우 낮은 편임**

-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1.6%)이며, 다자기구 중에서는 IDA(13.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와 비중이 비슷한 국가는 핀란드(0.4%)이며, 오스트리아(0.3%), 포르투갈(0.2%), 룩셈부르크(0.2%), 뉴질랜드(0.2%), 그리스(0.2%)는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낮음

□ 우리나라의 원조 집중도는 약 **51%** 수준이나, **소액의 원조를 고려하면 분산의 정도가 심해짐**

- 재정부/EDCF 및 외교부/KOICA의 25만 불 이상 규모의 CPA는 총 47개 수원국에 제공되었으며, 이중 24개 수원국(표2 참고)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우리나라의 Global share(0.4%)보다 높아, 집중도가 약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Concentration measure(원조 집중도) = No. of partners above global share / Total no. of partners

- 그러나, 25만 불 미만의 원조를 포함한 총 CPA는 133개국에 제공되었으며 집중도는 29%로, 소액의 원조를 포함하는 경우 분산의 정도가 심해짐

4) 동 섹션은 DAC 및 다자기구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분석을 위해 '05~'06년간 지출액 기준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따라서 최근 신규 원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05~'07년 집행 및 승인액을 <표 2>에 표시했음을 참고.

표1 Concentration of Survey Donors ('05~'06 평균, 총지출 기준)  
("Scaling up.." 9페이지 표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재작성)

	Total CPA* (USD mil)	Donor's share of total CPA	Total no of partners	No. of partners above average share	Concentration measure (D as % of C)
	A	B	C	D	E
United States	12,967	21.56%	128	34	27%
Japan	8,416	13.99%	135	44	33%
EC	6,219	10.34%	144	82	57%
United Kingdom	3,177	5.28%	93	36	39%
France	2,740	4.56%	123	50	41%
Germany	2,723	4.53%	110	59	54%
Netherlands	1,601	2.66%	93	42	45%
Sweden	1,080	1.80%	91	44	48%
Norway	1,003	1.67%	88	42	48%
Canada	974	1.62%	100	35	35%
Australia	955	1.59%	50	24	48%
Denmark	905	1.50%	71	27	38%
Spain	831	1.38%	81	42	52%
Italy	519	0.86%	76	32	42%
Switzerland	501	0.83%	86	38	44%
Belgium	498	0.83%	83	39	47%
Ireland	347	0.58%	56	23	41%
Finland	241	0.40%	62	27	44%
Austria	158	0.26%	53	27	51%
Portugal	146	0.24%	20	11	55%
Luxembourg	128	0.21%	40	25	63%
New Zealand	122	0.20%	43	25	58%
Greece	119	0.20%	34	23	68%
Total DAC members	46,372	77.10%			
IDA	8,012	13.32%	76	50	66%
AsDF	1,372	2.28%	26	18	69%
The Global Fund	1,104	1.84%	104	65	63%
AfDF	926	1.54%	37	32	86%
IDB Sp. Fund	479	0.80%	24	24	100%
UNICEF	475	0.79%	120	67	56%
UNDP	402	0.67%	120	72	60%
IFAD	328	0.55%	72	52	72%
UNFPA	276	0.46%	112	67	60%
GEF	139	0.23%	66	41	62%
Total major multilaterals	13,513	22.47%			
<b>Korea</b>	<b>258</b>	<b>0.43%</b>	<b>47</b>	<b>24</b>	<b>51%</b>
Total (incl. Korea)	60,144	100.00%			

\* Total CPA: 양자간 원조에서 채무구제,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행정비용, NGO지원, 간접 연수생 지원, 공여 국내 난민비용, 개발관련 연구, 개발협력 인식 증진, Main agency 이외의 기관에서의 원조(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를 제외한 원조), 25만 불 미만의 원조를 제외



※ 원조 집중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DAC의 수원국 분류 방법 (표2 참고)

Category A : "Donor extends more than its average share of global CPA"  
우리나라의 해당 수원국에서의 비중이 Global share 보다 높은 국가로서,  
우리나라 원조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수원국 (앞서 concentration  
measure를 통해 선정된 집중도가 높은 24개 수원국)

Category B : "Donors providing over 90% of CPA"  
수원국내 비중이 큰 공여국부터 순위를 매긴 후, 누적 비중이 90%가 되는  
공여국까지 추렸을 때 우리나라가 포함된 경우로, 우리나라를 해당 수  
원국에서의 'Main player'로 볼 수 있는 경우

- Global share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24개 수원국(Category A) 중 우리나라가 Main play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국(Category B)에 우리나라 원조의 비교우위를 둘 수 있음
  - 24개 수원국 중 Main player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Category A이면서 동시에 Category B에 속하는 11개국)
    - 우리나라 주요 지원국 (7개국)
      - 예멘,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앙골라, 방글라데시, 몽골
    - 일반 지원국 (4개국)
      - 미얀마, 케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 상기 11개국 이외의 Category A의 나머지 13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조 규모 확대를 통해, 원조 분업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Category B를 제외한 Category A 국가 (13개국)
      - 우리나라 주요 지원국 (6개국)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이라크, 베트남, 필리핀
      - 일반 지원국 (7개국)
        - 벨리즈, 볼리비아, 가나, 중국, 니카라과, 시리아, 엘살바도르
  - 다만, 동 Category A(24개국)에도 포함되지 못한 우리나라 주요 지원국(인니, 탄자니아, 파테말라 등)의 경우, 원조 경쟁이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원조 규모 확대 노력이 더 필요함
  - 또한, 24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상원조 금액이 0~3 백만불의 소규모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무상원조의 분산이 더 심하다는 뜻으로, 무상원조의 분산을 줄이고 원조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2 Category A의 24개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지원 현황

수원국(Category A)	'05~'06 평균 CPA (백만불)			우리나라 비중(%)	'05~'07 main agency 집행여 (백만불)		'05~'07 main agency 승인여 (백만불)		Main player (Category B)	우리나라 주요 지원국	소득그룹
	우리나라 외교 /KOICA	채정 /EDCF	전체 공여국		외교 /KOICA	채정 /EDCF	외교 /KOICA	채정 /EDCF			
MYANMAR	8	2	6	104	7.8	4	13	6	0	0	LDC
YEMEN	16	0	16	315	4.9	1	32	1	15	0	LDC
ALBANIA	8	0	8	304	2.8	0	21	0	0	0	LMIC
LAOS	9	2	7	319	2.8	8	23	13	63	0	LDC
SRI LANKA	22	3	19	888	2.5	17	64	21	37	0	LMIC
CAMBODIA	12	3	9	506	2.4	12	42	24	95	0	LDC
ANGOLA	5	0	5	262	1.9	0	27	0	115	0	LDC
BELIZE	0.2	0.2	0	9	1.8	0	0	1	0	0	UMIC
KENYA	13	0	13	726	1.8	2	26	3	11	0	LIC
BANGLADESH	25	1	25	1463	1.7	5	51	14	79	0	LDC
BOBIA-HERZGOVINA	6	0	6	432	1.5	0	21	0	0	0	LMIC
UZBEKISTAN	2	2	0	144	1.3	4	0	11	30	0	LIC
KAZAKHSTAN	1	0	1	132	1.0	2	2	7	0	0	UMIC
PARAGUAY	1	1	0	111	1.0	5	0	8	0	0	LMIC
IRAQ	56	56	0	6012	0.9	154	0	163	0	0	LMIC
BOLIVIA	4	0	4	591	0.7	1	16	1	0	0	LMIC
GHANA	7	0	7	1037	0.6	1	13	2	0	0	LIC
CHINA	14	2	12	2431	0.6	4	30	4	3	0	LMIC
MONGOLIA	1	1	0	170	0.5	5	4	15	26	0	LMIC
VIET NAM	10	6	4	2007	0.5	22	11	66	289	0	LIC
NICARAGUA	3	0	3	592	0.5	0	14	0	29	0	LMIC
SYRIA	0.4	0.4	0	89	0.5	1	0	1	0	0	LMIC
PHILIPPINES	5	3	2	1112	0.5	10	25	17	23	0	LMIC
EL SALVADOR	1	1	0	174	0.4	2	0	6	0	0	LMIC
전체 수원국(47개국*)	258	105	153	60143	0.4	359	473	533	1242		
24개국 지원 비중(%)		80.1	96.3			72.6	92.4	71.6	65.5		

\* 전체 수원국 : 우리나라 Main agency(외교부/KOICA, 채정부/EDCF)가 25만불 이상 규모의 CPA를 제공한 국가

## 나. 우리나라 분야별 비교우위

- 수원국내(In-country) 원조분업은 분야별로 3개국 이외의 Lead donor를 정하는 것이 핵심<sup>5)</sup>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원조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비교우위를 살피며 더 적극적인 원조 전문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자료의 제약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Lead donor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수원국내의 분야를 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자료를 활용해 조사<sup>6)</sup>
-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분야를 살펴보면, **통신(11%)**이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3 분야별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총괄표)

DAC code	분야	우리나라 비중
450	전체 배분 가능한 원조	0.7%
110	교육	1.0%
120	보건	0.9%
130	인구정책	0.0%
140	수자원위생	0.7%
150	공공부문	0.6%
160	기타 사회 인프라(사회복지시설 포함)	0.8%
210	교통	1.3%
<b>220</b>	<b>통신</b>	<b>11.0%</b>
230	에너지	0.9%
240	금융	0.1%
250	비즈니스 및 기타	0.0%
310	농임수산	0.8%
320	산업,광물,건설	0.8%
331, 332	무역정책 및 관광	0.6%
410	환경보호	0.2%
430	기타다부문	0.1%

5) p. 2, "Lead, Active, Silent and Background Donors in Division of Labour Arrangements", AAA Background Paper, 2008.

6) CRS 세부내역에는 주요 국제금융기구(IDA, AsDB, AfDB, IDB)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음. 동 섹션 대상이 되는 통계자료('05~07 총지출 기준)에서 DAC과 다자기구의 비중은 각각 83%, 16%로, '가.' 섹션의 67%, 33%와는 차이가 있으며(EC를 다자기구로 계산), 이는 약 18%를 차지하는 국제금융기구(IDA, AsDB, AfDB, IDB)의 자료가 CRS에 빠져있는 것으로 설명됨. 동 섹션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다자기구는 EC, UN기구 등임.

또한 현재 공개된 CRS 정보로는 정확한 CPA 금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DAC Table 5의 배분 가능한 원조(물자지원, 식량원조, 인도적 지원, 채무구제, NGO지원, 행정비용, 공여국내 난민비용, 개발협력 인식 증진, 기타를 제외한 양자간 원조)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했음. 따라서, CPA 중 간접연수생 지원과 Main agency 이외의 기관에서의 원조가 포함되어 있음.

□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수원국

○ 교육

- 라오스, 벨리즈,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 주요사업7):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22.7),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및 이라크 시범학교 건립사업, 카자흐스탄 자격검정확인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등

○ 보건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 주요사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사업(20.0)

○ 수자원/위생

- 니카라과, 지부티, 스리랑카 등

- 주요사업: 니카라과 후이갈과 상수도 사업(17.2), 스리랑카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1,2차 각 26.7, 14.8) 등

표4 수원국별 사회인프라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비중

(단위: %, '05~'07 지출액 기준)

교육		보건		수자원/위생		공공부문	
Laos	31.6	Bosnia-Herzegovina	46.5	Nicaragua	21.0	Antigua & Barbuda	35.4
Belize	22.9	Jordan	12.2	Djibouti	18.4	Dominica	34.7
Iraq	11.7	Swaziland	8.6	Kiribati	17.1	St. Vincent & Grenadines	34.4
Kazakhstan	10.9	Costa Rica	8.1	Sri Lanka	15.4	St. Kitts-Nevis	27.2
Cambodia	8.7	Venezuela	7.8	Fiji	7.0	St. Lucia	25.9
Uzbekistan	8.3	Sri Lanka	7.6	Laos	3.0	Grenada	14.9
Sri Lanka	7.8	Mongolia	7.3	Indonesia	3.0	Myanmar	14.8
Mongolia	6.9	Paraguay	6.6	Mongolia	2.1	Sri Lanka	10.4
Oman	5.4	Viet Nam	6.5	Cambodia	1.9	Oman	8.8
Myanmar	4.7	Samoa	4.9	Ethiopia	1.8	Cambodia	5.7
전체 수원국	1.0	전체 수원국	0.9	전체 수원국	0.7	전체 수원국	0.6

7) 주요사업은 단일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들이며, 총 사업비(승인규모)를 알 수 있는 경우 백만불 단위로 표시했음

○ 공공부문

- 엔티가바부다,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 주요사업: 미얀마 전자정부 구축사업(12.5), 스리랑카 함바토타 국제회의장 건립 사업과 함바토타 행정단지 건립 사업(20.0),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사업(1,2차 각 15.0, 7.0), 등

□ 경제 인프라 및 생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수원국

○ 통신

- 리비아, 예멘, 카자흐스탄 등 다수이며, 50%이상의 비중을 가진 나라도 13개국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은 나라가 많음
  - 주요사업: 예멘/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 통신망 현대화 사업(각 30.0, 20.0, 30.0), 파라과이/페루 정보체계 현대화 사업, 모로코/과테말라/베트남/시리아/에콰도르/라오스/터키/케냐/몽골 등 IT센터 설립 사업, 베트남 E-library 사업 등의 인프라 사업 및 몽골/미얀마 IT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IT 전문가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의 기술협력사업 등 광범위함

표5 수원국별 통신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비중

(단위: %, '05~'07 지출액 기준)

통신									
Libya	100.0	Dominican Republic	60.7	Sri Lanka	39.1	Thailand	28.4	Syria	22.1
Yemen	95.9	Panama	56.0	Pakistan	38.4	Chile	27.4	Maldives	17.4
Kazakhstan	90.4	Myanmar	50.8	Palestinian Adm	36.8	Philippines	26.4	Belize	17.1
Uzbekistan	82.3	Suriname	48.1	Morocco	35.7	Niger	25.6	Viet Nam	16.5
Guatemala	77.5	Congo, Dem Rep.	47.9	Ukraine	33.7	Cambodia	25.1	Kenya	14.0
Bangladesh	76.3	Peru	45.4	Laos	31.4	Indonesia	24.6	Colombia	13.7
Iran	74.5	Ecuador	42.8	Trinidad & Tobago	31.2	Fiji	22.8	Rwanda	12.9
Paraguay	67.1	Sudan	42.3	Tajikistan	29.4	Turkey	22.2	El Salvador	11.4
Cote d'Ivoire	66.4	Ghana	41.8	Georgia	29.0	St Vincent & Grenadines	22.2	Jordan	9.8
Mongolia	62.2	Nepal	39.2	Solomon Islands	29.0	Mexico	22.2	Nigeria	9.4
								전체 수원국	11.0

○ 교통

- 마셜군도, 볼리비아, 미얀마, 이란, 코트디브아르,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케냐, 몽골, 방글라데시 등
  - 주요사업: 볼리비아 고속도로 교량건설 사업(23.0), 미얀마 아세안 5개국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판로포간 도로 개보수 사업(17.1),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사업, 케냐 도로보수용 장비 개체사업(25.0), 몽골 초이르~사인산드 고속도로 건설사업(23.9), 방글라데시 철도 현대화 사업(28.0) 등

○ 농임수산업

- 앙골라, 몽골
  - 주요사업: 앙골라 농업현대화 사업(31.4), 몽골 기축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센터 건립사업 등

○ 산업, 광물자원, 건설

- 그레나다, 몰디브, 키리바시, 우즈베키스탄, 피지, 이란

○ 무역정책 및 관광

-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아이티,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란, 필리핀, 바베이도스, 파푸아뉴기니

표6 수원국별 경제인프라 및 생산부문에서의 우리나라의 비중

(단위: %, '05~'07 지출액 기준)

교통		농임수산업		산업,광물자원,건설		무역정책 및 관광	
Marshall Islands	69.1	Angola	52.9	Grenada	64.1	Iraq	78.4
Bolivia	46.6	Mongolia	12.6	Maldives	32.2	Turkmenistan	51.4
Myanmar	40.0	Guinea	5.6	Kiribati	31.3	Haiti	19.1
Iran	29.6	Uruguay	4.5	Uzbekistan	25.6	Algeria	17.4
Cote d'Ivoire	23.4	Sri Lanka	4.3	Fiji	13.5	Oman	16.0
Cambodia	20.8	Myanmar	4.3	Iran	11.5	Uzbekistan	15.5
Nigeria	20.3	Algeria	4.2	Nepal	9.9	Iran	14.6
Kenya	16.0	Maldives	4.1	Philippines	9.2	Philippines	14.4
Mongolia	14.6	China	3.8	Libya	9.0	Barbados	13.6
Bangladesh	14.6	Cambodia	3.6	India	8.2	Papua New Guinea	12.7
전체 수원국	1.3	전체 수원국	0.8	전체 수원국	0.8	전체 수원국	0.6

- 우리나라는 통신, 교통, 수자원·위생, 산업, 공공부문, 무역 분야에서 다수의 수원국에서 비교우위가 있었으며, 동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들임

#### 다. 우리나라 기관별 원조의 분산

- 전 세계적인 원조 분업 논의 이전에, 우리나라 공여기관의 분산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05~'07 총지출 기준,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83.3%는 재정부/EDCF 및 외교부/KOICA에서 집행하였으며, '08년(잠정치) 기준 동 4개 기관의 비중은 87.8%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재정부/EDCF 및 외교부/KOICA의 비중 추이(%): 77.5('05년) → 87.0('06년) → 86.3('07년) → 87.8('08년)
  - 4개 기관 외에 '05~'07 연평균 1백만 달러 이상 양자간 원조를 집행한 기관
    - 국방부(32.9백만불), 교육과학부(16.1, 교육부와 과기부 실적), 구 정보통신부(11.9백만불)<sup>8)</sup>, 지식경제부(4.0백만불), 보건복지부(2.5백만불), 서울특별시(2.3백만불), KDI(1.3백만불), 농림수산식품부(1.2,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실적)
- '05년 DAC 회원국의 양자간 원조(총지출)에서 'Aid not from main agencies'의 비중 5.7%<sup>9)</sup>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요 원조기관의 비중은 DAC보다 낮은 수준이나, 국방부의 대 이라크 지원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비중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음
  - 국방부 지원 양자간 ODA(백만불): 81.0('05년) → 8.5('06년) → 9.2('07년) → 5.1('08년)
- 한 수원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관의 분산을 살펴보면, 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를 제외하면 많게는 19개의 공여 기관이 원조를 실시하여 분산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나, 연수생 초청이나 전문가 파견과 같이 인력의 교류가 주를 이루는 기술협력을 제외하고 나면, 최대 4개 내외의 기관이 원조를 공여하고 있음
- 또한 몽골,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의 원조에서는 이들 기관의 원조액 비중도 높은 편

8) 08년 정부부처 개편시 정보통신부의 사업은 대부분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

9) "Scaling Up :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 8페이지.

표7 각 수원국별 재정부/EDCF, 외교부/KOICA를 제외한 원조 기관 현황

(‘05~07 지출액 기준)

	수원국	2005		2006		2007		'05~07 평균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술협력 포함	베트남	20	15.1	19	26.8	18	29.9	19
	몽골	15	49.9	18	47.6	18	26.4	17
	인도네시아	17	10.0	16	11.3	14	17.0	16
	중국	16	11.2	13	23.9	15	40.8	15
	필리핀	16	7.4	11	17.7	10	5.8	12
	태국	14	14.6	10	28.9	11	32.7	12
	말레이시아	10	74.6	9	87.0	9	100.0	9
	캄보디아	8	4.3	8	5.7	10	2.8	9
	인도	10	85.9	7	71.8	8	100.0	8
	라오스	8	15.6	8	7.7	8	5.5	8
	전체 양자간 원조	29	22.5	32	13.0	33	13.7	31
기술협력 제외	몽골	4	69.3	5	64.2	4	21.7	4
	인도네시아	8	7.1	3	3.6	1	0.1	4
	베트남	4	5.2	4	17.8	3	28.0	4
	스리랑카	5	2.4	2	0.3	2	0.2	3
	필리핀	4	2.9	3	10.8	2	0.2	3
	동티모르	2	88.6	3	57.2	2	32.3	2
	라오스	3	14.2	1	0.2	3	3.0	2
	우즈베키스탄	3	100.0	2	31.4	2	84.7	2
	중국	2	1.8	2	5.6	3	5.7	2
	캄보디아	2	1.1	2	1.2	3	0.4	2
	전체 양자간 원조	15	22.6	14	5.4	15	5.3	15

### 3. 시사점

- 원조 분업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피고 지역·분야별 분산의 정도를 줄이고 원조를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원조 절대 규모가 작아 **Global share**는 미미하지만, 예멘,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앙골라, 방글라데시, 몽골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단,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상원조의 규모가 0~3백만불로 작게 나타나, 분산되어 있는 무상원조의 집중도를 높여 원조분업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니, 탄자니아 등 원조 경쟁은 심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지원국인 수원국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 공유가 가능한 통신, 교통, 수자원·위생, 산업, 공공부문, 무역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경우를 다수 발견함
- 동 분야를 중심으로 1개 수원국에 3개 이하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원조 분업에 대비 필요
- 우리나라 4개 주요 원조기관(재정부/EDCF 및 외교부/KOICA)의 비중은 **83.3%**로 DAC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 수원국 내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우리나라 기관도 **2~6개** 정도(기술협력 제외)로 분산의 정도는 적은 편임
- 단, 프로젝트성 원조의 효과적인 수행 및 수원국의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경험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 정책협의(Policy dialogue)** 등 추진 필요

자 료 : OECD DAC 통계 데이터베이스([www.oecd.org/dac/stats](http://www.oecd.org/dac/stats))  
Scaling Up :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 (OECD DAC, 2008.5)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 2008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 【요약】

-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참가국의 2008년도 원조사업 통보 결과를 보면,
  -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54억 SDR을 기록
    - 이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46억 SDR을 차지했으나, 일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증가이며 통보 건수는 역대 최저치 기록
  -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60억 SDR로 전년대비 증가
-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에 의해 사전 통보된 원조는 총 77건, 63억 SDR으로 합의 시행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임

### I.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consensus notification)

#### 1. 수출신용협약의 개요

##### □ 수출신용협약의 의의

- '수출신용협약(Agre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은 공적 수출신용 및 무역관련 원조가 초래하는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1978년 4월 참가국 합의하에 제정되었음
  - 동 협약은 수출신용의 금융조건, 타이드 원조에 관한 규정, 통보 및 협의 절차, 부문별 양해<sup>10)</sup> 등으로 구성

##### □ 통보 대상

- 수출신용협약의 통보 대상이 되는 원조는 무역과 관련된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임
  - 타이드 원조는 지원금액 및 양허성 수준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통보 대상이 되며, 언타이드 원조는 사전통보 대상에만 해당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10) 선박·핵발전소·민간항공기·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프로젝트 등 특정부문에 대한 양해(sector understanding)로서 수출신용협약의 첨부자료를 구성

## 2. 통보 내용

### 가. 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 2008년에 통보된 타이드 원조는 전년에 비해 증가
  -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54억 SDR, 통보건수는 21% 감소한 201건을 기록
    - 양허성 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4억4천만 SDR)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Helsinki-type 타이드원조 (46억 SDR)는 증가했음
  - 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36억 SDR(2004년) → 52억 SDR(2005년) → 38억 SDR(2006년) → 47억 SDR(2007년) → 54억 SDR(2008년)
- 통보된 타이드 원조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sup>11)</sup>는 전년대비 35.3% 증가한 46억 SDR로 1995년 이래 최고치
  - 단, 통보건수는 115건으로 전년(127건)대비 하락했으며, 1995년 이래 최저기록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증가는 일본이 지원하는 인도 철도 사업(13억SDR) 등 3개 대형 사업 지원 때문임

####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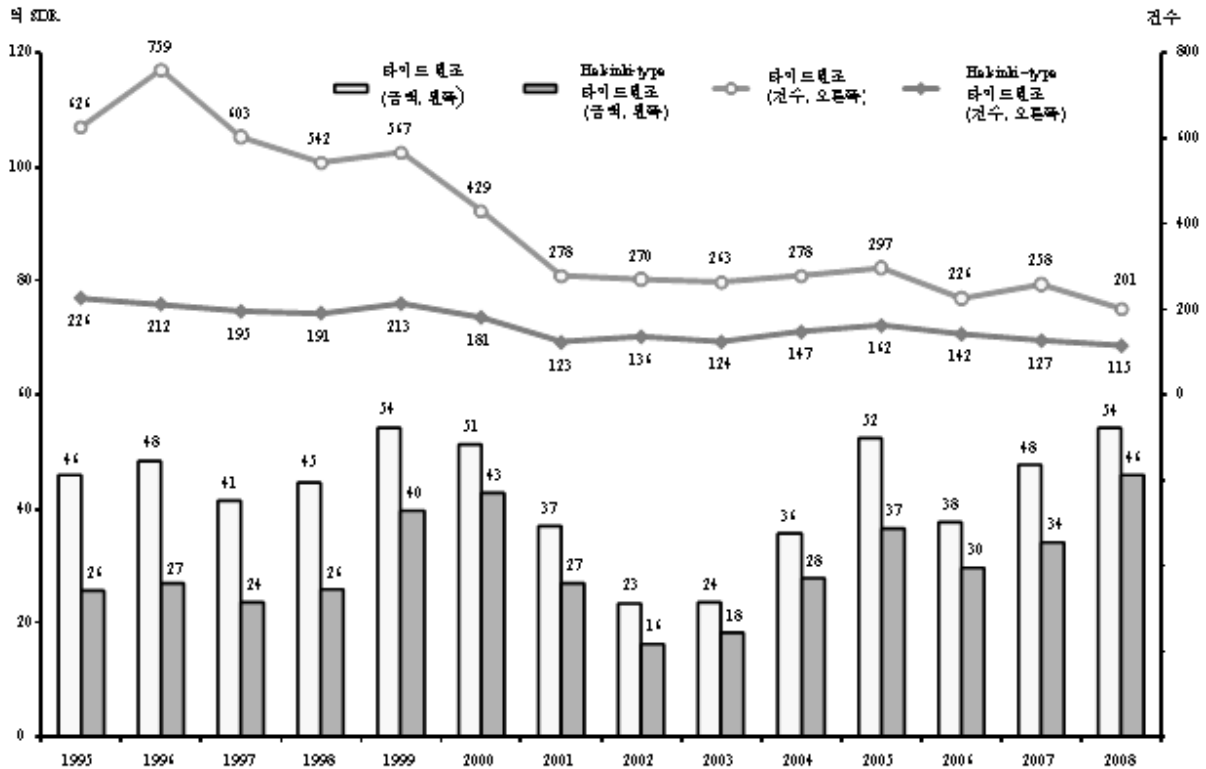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SDR)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누계*
통보대상 원조(all aid)	10,732.2	9,114.0	9,888.0	11,397.5	n.a
- 언타이드 원조	5,501.7	5,343.0	5,121.0	5,982.5	n.a.
<b>= 타이드 원조(tied aid)</b>	<b>5,230.5</b>	<b>3,771.0</b>	<b>4,767.0</b>	<b>5,415.0</b>	<b>71,445.4</b>
- 소액 타이드 원조(2백만 SDR 미만)	77.5	51.5	66.0	50.5	2,883.2
- 최빈국에 대한 타이드 원조	115	291.5	462	322.5	5,785.6
- 양허성 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	1,371.0	457.5	832.0	442.0	12,886.1
<b>=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b>	<b>3,667.0</b>	<b>2,970.5</b>	<b>3,407.0</b>	<b>4,600.0</b>	<b>49,890.5</b>

\* 1992. 3. ~ 2008. 12

11) 상업성이 있는 사업과 고소득국가(세계은행 분류 기준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이상)에 대한 타이드 원조 공여를 규제하기 위해 '92년에 도입된 Helsinki package의 규제대상이 되는 2백만 SDR 이상, 양허성 수준 35~80%의 타이드 원조를 말함

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8)



- 2008년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주요 공여국은 일본과 프랑스<sup>12)</sup>로 전체의 60.4% 정도를 제공
  - 주요 공여국은 일본(43.5%), 프랑스(16.9%), 스페인(12.8%), 한국(11.4%)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개별국가로는 단일 사업 규모가 큰 인도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
  - 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집중(37.0%)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8년 주요 수원국은 인도(28.7%), 베트남(22.6%), 모로코(17.1%), 튀니지(5.6%), 스리랑카(5.1%), 중국(5.1%), 페루(3.0%), 파키스탄(2.9%)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과 교육·보건·수자원 및 위생 등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분야에 집중

12) 프랑스는 2008년 자국 원조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7억7천만 SDR을 제공하면서 두 번째 주요 공여국이 됨

- 교통 부문(철도, 도로, 해상운송, 항공 등)은 2008년 전체 실적의 71.4%, 교육·보건·수자원 및 위생 등은 18.1%를 차지
-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통신, 에너지, 제조 부문에 제공된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감소추세
  - 통보된 115건 중 14건만이 동 분야에 지원됨

□ **소액차관(de minimis)<sup>13)</sup>**은 작년에 비해 통보 건수 및 금액 감소

- 소액차관 통보 추이 : 89.5백만 SDR(75건, 2004년) → 57백만 SDR(48건, 2005년) → 44.5백만 SDR(37건, 2006년) → 48.0백만 SDR(48건, 2007년) → 32.5백만 SDR(29건, 2008년)
-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스페인(21.9%)이 가장 많은 소액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15.0%), 프랑스(12.4%), 네덜란드(10.2%) 등이 뒤를 이음

□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는 4.4억 SDR(11건)로 전체 타이드 원조의 8%를 차지

-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의 공여국은 미국(83.0%), 이태리(10.2%), 스페인(3.4%) 등 3개국이며 주요 지원분야는 건설(66.7%), 식수공급 및 위생(17.0%)

□ **매칭(matching)** 통보 건수는 199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1~5건에 불과

- 1992년 Helsinki 원칙이 도입되어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매칭 건수는 1993년부터 점진적인 감소세가 시작됨
  - 1995년 항공운송 부문에서의 미국에 의한 다수의 매칭통보(35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외
- 2008년 매칭 통보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통보 국가는 2004년 이후 프랑스, 일본, 이태리 등 6개국에 국한

□ **대면협의(consultation)**를 받은 사업 건수도 1996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일본의 대 인도 철도 지원 사업 한건 발생

13)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에 포함되지 않는 2백만 SDR 미만의 소액 차관

- 1996년에 프로젝트의 상업성 판정기준을 제시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for Tied Aid)이 마련되면서 대면협의 사례가 감소
- 일본의 인도 철도 지원 사업은 대면협의에서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일본은 예정대로 사업을 지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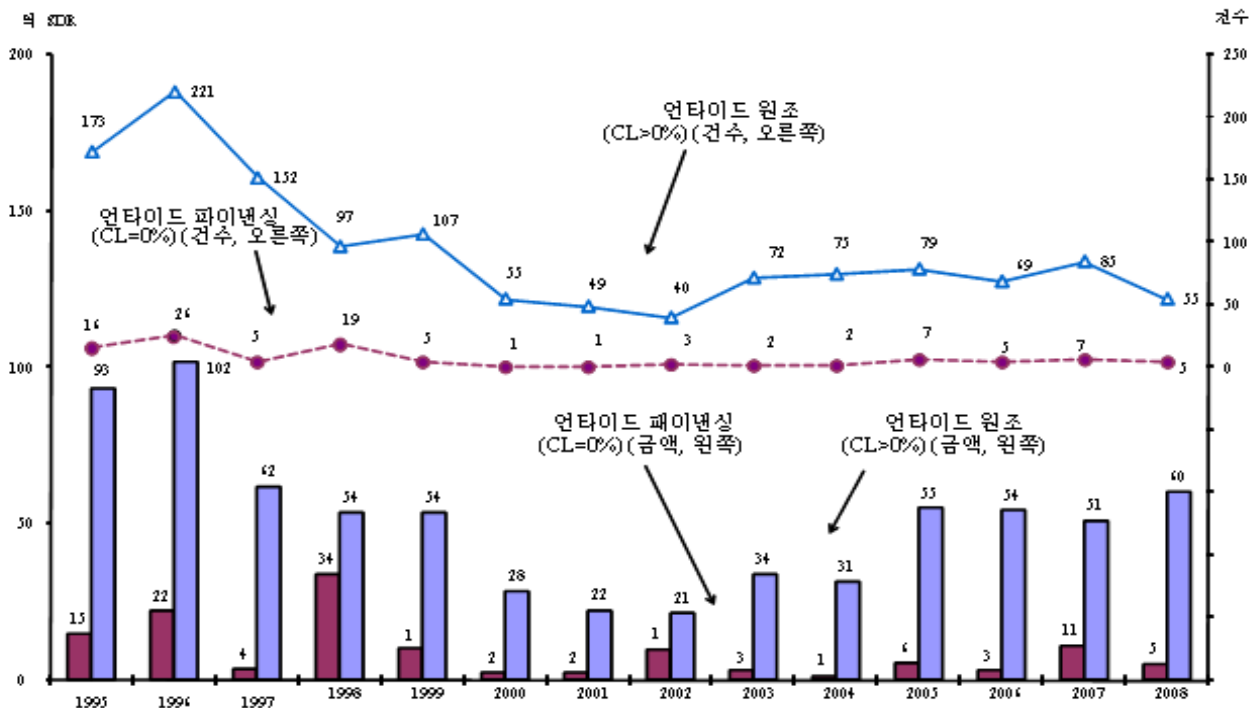
## 나.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 2008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60억 SDR)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하였고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54억 SDR)도 소폭 상회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55건으로 전년(87건)대비 상당히 줄어들음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31억 SDR(2004년) → 55억 SDR(2005년) → 54억 SDR(2006년) → 51억 SDR(2007년) → 60억 SDR(2008년)

※ 언타이드 파이낸싱<sup>14)</sup>은 총 5건, 5억 SDR을 기록해 작년에 비해 감소

언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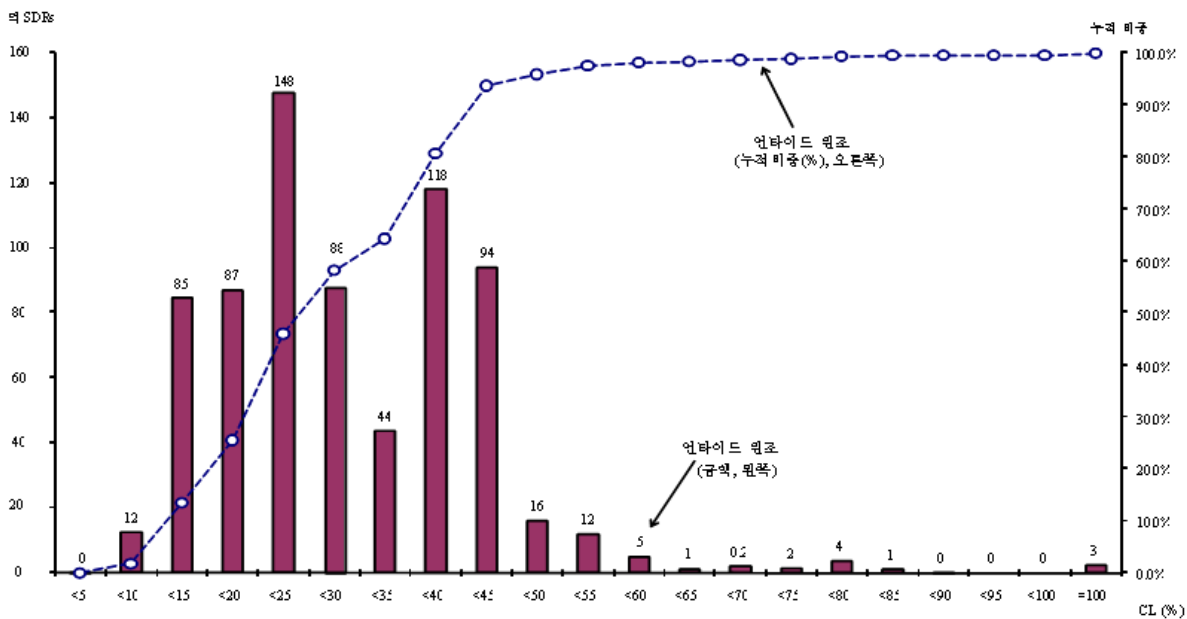


14) 언타이드 파이낸싱은 양허성 수준이 0%인 언타이드 자금지원(원조가 아님)으로 협약의 통보대상은 아니나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이 인도, 중국, 태국 등을 대상으로 언타이드 파이낸싱을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sup>15)</sup>

- 2008년 언타이드 원조의 64.3%가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 35% 미만으로 지원되었으며, 25~30% 사이에 집중(47.6%)됨
- 언타이드 원조의 과거 14년간(1995~2008) 평균 양허성 수준은 28.9%
  - 양허성 수준 25% 이하가 약 40%를 상회하며, 양허성 수준 35% 이하는 60%를 넘어섬
  - 동 기간 각국의 평균 양허성 수준은 영국(100.0%), 네덜란드(81.0%), 한국(65.3%), 이탈리아(50.1%), 스페인(45.2%), 노르웨이(43.2%), 독일(41.3%), 덴마크(32.2%), 스웨덴(27.9%), 일본(27.8%), 프랑스(27.2%) 순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 구성(1995~2008)



\* 과거 14년간(1995~2008)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의 합계금액(848억 SDR)을 대상으로 작성

□ 언타이드 원조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전체 통보금액의 약 95%를 차지

- 2008년 주요 공여국은 일본(95%), 프랑스(4.25%), 한국(0.25%), 스페인(0.21%) 순이며 특히, 일본은 금액과 건수(45건)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일본은 과거 14년간(1995~2008) 언타이드 원조의 90.3%를 제공

15) 언타이드 원조는 최소한의 양허성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최소한 35%이상 (최빈국에 대해서는 50%)이 되어야 함

- 언타이드 원조의 주요 수원국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2008년 인도가 최대 수원국으로 부상
  - 2008년 주요 수원국은 인도(53.3%), 스리랑카(7.6%), 인도네시아(4.7%) 순
  - 인도를 제외한 모든 수원국의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
  - 과거 14년간(1995~2008) 주요 수원국은 중국(14.8%), 인도(14.6%), 인도네시아(10.8%), 베트남(8.7%), 태국(6.1%) 순
    - 이들 국가에 대한 양허성 수준은 중국 28.3%, 인도네시아 26.9%, 인도 26.8%, 베트남 30.5%, 태국 22.0%
- 2008 언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과 수자원 및 위생 부문을 주로 지원
  - 2008년 주요 지원부문은 교통(45.0%), 수자원 및 위생(23.3%), 에너지(16.7%) 순
  - 과거 14년간(1995~2008) 언타이드 원조는 절반 이상이 교통 부문(30.5%)과 에너지 부문(22.8%)에 집중

**【참고】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적용한 모의실험<sup>16)</sup> 결과**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타이드 원조에 ‘타이드 원조 적격국가 기준(Country Eligibility 기준)’ 및 ‘최저 양허성 수준(35%)’을 적용하여 ‘헬싱키 타이드 원칙’ 부합 여부를 가상으로 실험<sup>17)</sup>해 봄
  - 언타이드 원조가 실질적으로는 타이드化되어 무역질서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언타이드 원조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참가국의 주장에 따름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주로 언타이드 원조의 낮은 양허성 수준으로 인해 과거 언타이드 원조실적의 약 68.6%가 헬싱키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4년간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721억 SDR) 중 495억 SDR<sup>18)</sup>이 헬싱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과거의 언타이드 원조를 모두 헬싱키 타이드 원칙에 맞게 지원하려고 했다면 참가국들은 언타이드 원조예산을 44.7% 늘렸어야 했다는 결과가 나옴
  - 과거 14년간의 언타이드 원조금액(721억 SDR)과 언타이드 원조의 평균 CL(28.9%)을 감안할 때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grant)은 208.4억 SDR<sup>19)</sup>에 달함
  - 이를 언타이드 원조예산으로 볼 때, 헬싱키 원칙의 CE기준과 CL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조예산의 약 44.7%, 즉 93억 SDR<sup>20)</sup>의 추가 예산이 필요



## II.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 1. 투명성 합의의 개요

#### □ 투명성 합의의 의의

-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는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化를 막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1월 제93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로서 2년간(2005.1~2006.12) 시행되었으며, 2006년 11월 제98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그 유효기간이 2008년 말까지로 연장됨
- 동 합의는 언타이드 원조(기술협력 포함)에 대한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강화, 국제경쟁입찰 방식 사용 등을 골자로 함
- 2008년 11월, 미국의 제안으로 유효기간이 2010년까지로 다시 연장됨

#### □ 통보 대상

- 투명성 합의의 통보 대상은 언타이드 원조(Untied ODA Credits)으로 이는 주로 언타이드 차관을 말함
- 사전 및 사후 통보대상은 5백만 SDR 이상의 원조차관과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FEED, A&E, PRTA 등)임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2. 통보 내용

#### 가. 사전통보(ex ante notification)

- 2008년에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원조는 총 77건, 63억 SDR으로 2007년(85억 SDR)에 비해 26% 줄어드는 등 합의 시행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임

16) 과거 14년간(1995~2008)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실적(1,325건, 721억 SDR)을 대상으로 분석

17)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은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성 기준(commercial viability)은 배제. 타이드 원조 적격 국가 기준(Country Eligibility, CE)은 세계은행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08년 1인당 GNI기준 \$3,706 이상)에 대해서는 타이드 원조 공여가 금지됨을 말함

18) 적격국가 기준(CE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55억 SDR)와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CL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440억 SDR)가 이에 해당

19) 즉, 원조예산 = 721억 SDR × 28.9% = 208.4억 SDR

20) CE기준에 따라 비적격국에 대해서는 CL 80% 이상을 맞춰야 하므로 32억 SDR이 추가로 소요되고, CL기준에 따라 최저 CL(35%)을 맞춰야 하므로 61억 SDR이 추가로 소요되어 총 93억 SDR의 추가 예산이 필요



- 2008년 사전통보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 언타이드 원조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52억 SDR)으로 사전통지된 원조금액의 82.2%를 차지했음
- 2008년 주요 공여국은 일본(82.2%), 독일(10.2%), 프랑스(6.5%), 네덜란드(0.7%), 노르웨이(0.3%), 스페인(0.2%) 순이고, 주요 수원국은 인도(46%), 스리랑카(6.9%), 모로코(5.2%), 중국(5.2%), 인도네시아(4.1%) 순
- 사전통보 언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47.7%)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7년과 마찬가지로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24.8%)과 에너지 부문(16.9%)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언타이드 원조의 절반 이상이 기술협력을 포함한 원조사업임
- 전체 사전통보 건(77건) 중 42건(46억 SDR)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33건), 프랑스(6건)가 이를 지원
- 언타이드 원조의 대부분이 국제경쟁입찰(ICB)을 적용
- 투명성 합의는 구매계약시 가능한 한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언타이드 원조의 93.5%는 ICB를 적용한 반면, ICB 적용이 어려운 6.5%는 현지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함

## 나. 사후통보(ex post notification)

- '05~'07년간 사후통보 결과<sup>21)</sup>에 따르면, 사후통보건 입찰의 96%가 국제경쟁입찰(ICB)을 실제 적용했으며,
- 입찰 결과, 수원국은 금액기준으로 31%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공여국은 24%, 기타 수출신용협약 참가국이 36%를 수주
- 단, 건수 기준으로는 수원국이 54%를 수주했고, 협약참가국이 8%를 수주해, 상대적으로 수원국이 적은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음을 알 수 있음

21) 국제 ODA 동향 2008년도 제3호,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 통보 결과 분석" 참고.

- 그러나 참가국들은 '07년 사전통보 건 중 12%만이 사후 통보 되는 등, 입찰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합의 시행기간을 2010년까지로 연장시킴

###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2008년 타이드·언타이드 원조의 총 통보 규모(114억 SDR)는 전년대비(98억 SDR) 증가하였으며 향후 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차츰 늘어날 전망
  - 그러나, OECD 회원국의 언타이드 원조 증가 추세로 볼 때, 향후 언타이드 원조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올해 일부 대규모 타이드 사업 지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이드 원조 금액이 증가했으며, 타이드 원조 통보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 타이드 원조는 **Helsinki 원칙을 잘 따르고** 있으며, 언타이드 차관은 최근 도입된 투명성 합의에 따라 통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08년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88%가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분야(교통, 교육, 보건, 수자원·위생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타이드 원조의 대면협의 건수와 매칭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92년 도입된 Helsinki 원칙과 '96년 마련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됨
    - 대면협의는 '08년 , 매칭은 최근 4~6건으로 줄어들음
  - 2005년부터 시행된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투명성 합의에 따라 원조공여국은 사전·사후 통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동 투명성 합의에 따라 언타이드 차관을 통보한 국가는 국제경쟁입찰(ICB)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언타이드 사후통보 결과, 'De facto 타이드'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면,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규제 가능성 상존
- 현재,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사후통보 분석 결과가 미흡하여, 미국의 제안에  
의해 동 합의를 다시 2010년까지 연장

자 료 : 1. Tied Aid: 2008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ngement, 2009.4  
2. Untied Aid: 2008 "Shadow" Helsinki Review of Untied Notifications, 2009.4  
3. 2008 Full-Year Review: Arrang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2009.4

작 성 : 김 지 은, [julliee@koreaexim.go.kr](mailto:julliee@koreaexim.go.kr)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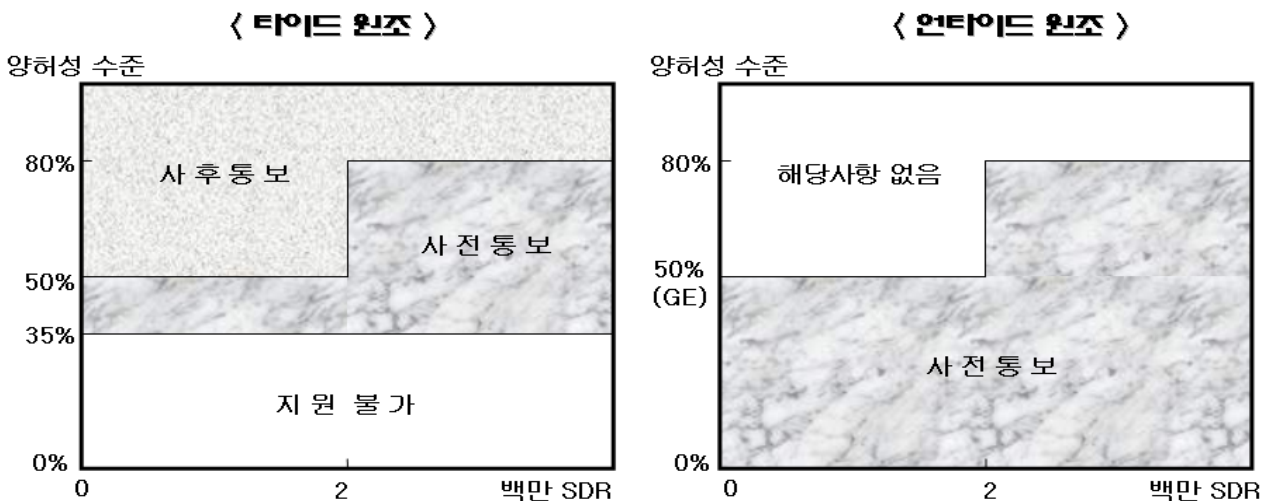
(붙임)

## 원조사업의 OECD에 대한 통보의 종류

### 1.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

통보 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무역관련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미만
	언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증여율이 50% 미만
사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이상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이상
	언타이드 원조	해당사항 없음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입찰마감일 또는 원조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영업일 이전에 통보
- 사후통보 : 약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

통보 내용

-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모두 동일한 통보양식을 사용하여 건별로 통보
  - 기본정보, 수입자/차주/보증인 정보, 수출되는 재화용역 및 프로젝트관련 정보, 금융조건, 원조형태, 양허성 수준, 차등할인율(DDR)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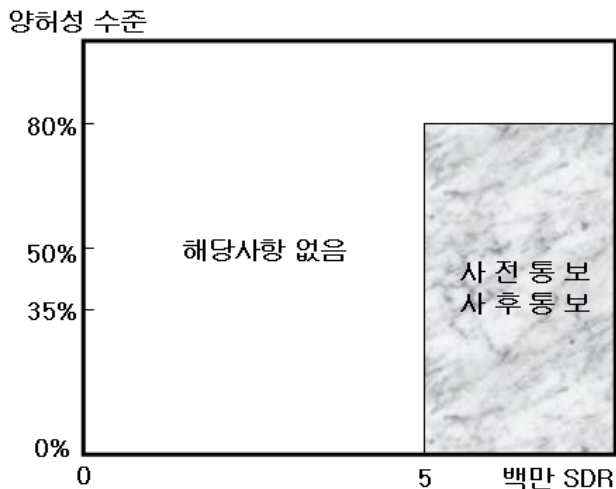
## 2.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 통보 대상 :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 수준이 80% 미만인 언타이드 차관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 포함)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언타이드 차관	지원금액이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기술협력	13만 SDR 이상의 투자연계기술협력(IRTC)*

\* 투자연계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기술협력으로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지원(FEED), 건축엔지니어링지원(A&E), 구매관련기술지원(PRTA) 등을 말하며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 또는 수행과는 무관한 독립기술협력(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는 구분됨

〈 언타이드 차관 〉



〈 기술협력(IRTC) 〉



###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건별로 입찰개시일 **30일전**까지 통보
- 사후통보 : 직전년도 사전통보 건의 **입찰결과**를 집계하여 차년도에 일괄 통보(연1회)

### □ 통보 내용

- 사전통보 : 프로젝트 금액, 공여국, 수원국, 프로젝트 개요, 입찰정보, 구매주관기관, 기술협력, 차관금액 및 지원조건 등
- 사후통보 : 사전통보번호, 공여국, 수원국, **계약금액**, **수주기업**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

ODA 단신 1

## 언타이드 원조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 1. 토론회 개최 배경

- 우리나라의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관련, 아국 원조정책의 선진화 및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관심 고조
  - 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09. 4. 2 정부, 기업,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 2. 주요 논의 내용

- 언타이드 원조 확대의 영향
  - 언타이드를 전면 확대할 경우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아국 기업 수주율 및 투자유인 감소 예상
    - 아국기업의 경우 현장 기술력 등 사업 구체단계별 요소 경쟁력은 있으나 **Communication, Documentation, Political ability** 등의 부족으로 수주경쟁력에 한계
    - 최빈국의 경우, 과거 유럽과의 특수관계 등으로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으로 인해 아국의 시장 접근성이 더욱 제한
- 언타이드화의 점진적 도입
  - 아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 필요
    -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언타이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국 수출산업을 육성
  - DAC 가입시 점진적인 언타이드 확대계획을 제시하되 우리기업의 현실과 국제적인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안 도출 필요

- 중소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산업 육성

- 본 사업 수주의 선행단계인 컨설팅 분야의 경쟁력 강화 기반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 필요
-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한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관리능력 제고 시급

□ 그 밖의 대책

- MDB 프로세스, 국제개발컨설팅,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등의 교육과정 개발로 인재 육성
-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 지원 타이드 유지
- 타이드 지원시 우대
  - 일본의 STEP 차관처럼 타이드 지원시 우대 내용 추가
- MDB 협조용자의 활용
  - MDB 신탁기금 활용 및 MDB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아국기업 지원
- 정보력 강화
  -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력 강화를 위해 대사관, KOTRA, EDCF 등 정부 유관기관 통합 지원체제 운영 필요

### 3. 시사점 및 의의

- 원조의 언타이드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이지만, 아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 필요
- 아국 기업의 프로젝트 관리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까지는 점진적인 언타이드화가 바람직

- 언타이드 원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특히, 국제개발사업의 컨설팅 수행 실적이 부족한 아국 컨설팅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자원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원조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작 성 : 양 행 민, [haengmin@koreaexim.go.kr](mailto:haengmin@koreaexim.go.kr)

정 리 : 김 지 은, [julliee@koreaexim.go.kr](mailto:julliee@koreaexim.go.kr)

목차보기



## OECD DAC 제14차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

### 1. 회의 개요

- DAC의 8개 작업반 중 하나인 원조효과작업반(WP-EFF)은 '09. 3. 31 ~ 4. 1 일간 제14차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 DAC 회원국, 국제기구, NGO, Non-DAC 공여국 및 수원국 대표 등 총 170여명이 참석

### 2.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 가. 원조효과작업반 새 의장 및 집행 위원회 선출

- 원조효과작업반은 공동 의장으로 Mr. Talaat Abdel-Malek(이집트)와 Mr. Koos Richelle(EC)를 선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외교부 오준 다자의 교조정관과 세계은행의 Barbara Lee를 부의장으로 선출
- 회원국들은 원조효과작업반 의장 및 부의장, DAC 의장을 포함하여 10개 공여국 대표(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포함) 및 10개 수원국 대표로 집행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무국 제안을 수락, 향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를 선정할 예정

#### 나. 아크라 행동강령(AAA)의 이행 점검

- 수원국 입장조정회의(Partner countries' Caucus) 회원국 및 국제시민 사회조직은 AAA 이행의 피드백을 통해 각국의 AAA 이행 현황을 발표

“Beginning now” commitments

공여국 이행사항	수원국 이행사항	공여국수원국 공동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 시스템 활용</li> <li>·원조공여시 부여되는 조건 공개</li> <li>·수원국 앞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승인·집행 정보 공개</li> <li>·3-5년 단위 중기원조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AA이행을 위한 Country-based Action Plan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내 원조분업원칙 채택</li> <li>· ‘09.6월부터 원조분업관련 Global Dialogue 시작</li> </ul>

- 카메룬은 공여국과의 대화 메커니즘 구축, sectoral level에서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시행중이며, 방글라데시는 local consultant group과의 정기적 미팅, 현재 자체 재정 및 구매시스템 사용, SWAPs\* 활용 등을 통해 AAA의 이행을 적극 실천

\* SWAPs : Sector Wide Approaches

- Better Aid는 시민사회의 AAA 혹은 원조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사회가 원조 조화 프로세스 및 공약(commitment)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

□ 수원국내 원조분업원칙

- 수원국내 원조분업원칙의 채택은 AAA 이행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서, 동 원칙은 수원국내 원조 공여국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거래비용과 수원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 많은 참가국들이 수원국의 리더십 하에서 원조 분업 원칙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다만 동 원칙이 기존의 원조 분업을 위한 합의 및 공약들을 제한하지 않고, 수원국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 단, 일본은 원조분업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원조 정책 및 방법(modality)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

수원국내 원조분업원칙의 주요 내용

원칙	주요 내용
Rationalize Aid (원조 합리화)	<b>원조분업을 통한 공여국의 중복 지원 방지</b> 각 공여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및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고, 그 외 원조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공여국에 업무 이양
Partner Country Leadership (수원국 리더십)	<b>수원국 주도하의 원조분업 과정 이행</b> 선도공여국(lead donor) 및 공여국의 비교우위 선정과정에서 수원국의 주도적 참여 요구
Optimal Use of Development Resources (개발자원의 최적 사용)	공여국의 지역·분야별 비교우위를 분석, 선도공여국 선정 및 역할 부여
Flexibility and Pragmatism (유연성 및 실용주의)	원조 분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유연성과 실용성 추구
Capacity Development (역량 개발)	지속적인 원조분업을 위한 수원국의 원조 관리능력 향상 지원이 필수적
Neutral Impact on Aid Volume (원조 규모에의 중립적 영향)	공여국은 원조분업이 원조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Monitoring and Evaluation (감독 및 평가)	공여국과 수원국의 지속적인 원조분업 성과 감독 및 평가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원조분업 성과를 정치·입법부문 및 시민 사회와 공유

- UNDP, ADB 등은 파리선언과 AAA 이행을 위한 아시아 지역 회의인 'Capacity Development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09.3월, 필리핀)의 성과 공유
- CDDE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Peer-to-Peer 협력, 원조효과성 관련 Knowledge Management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는 CDDE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참여

#### 다. 원조효과작업반의 과업(Work programme)

- 5개 클러스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웨덴을 비롯한 다수의 참가국들이 클러스터/Task Team별 업무의 중복(duplication)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안으로 기존의 진행 중인 구조(existing structure)의 활용 및 클러스터간 공동 회의 개최 등을 제안
- 또한 각 업무별 시한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Task Team 및 과도한 업무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점을 우려, 캐나다는 우선순위(priority)의 설정 및 핵심 결과물(deliverables)의 통일 등을 대안으로 제시
  - ※ 현재 클러스터 업무 계획에 따르면, 5개 클러스터 하에 20개의 Task team, 69개의 업무, 73개의 활동결과물이 목표로 설정
- 이번 원조효과작업반 활동은 country level에서의 AAA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의장단은 클러스터 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파리선언 indicator에 기초한 활동결과물을 설정하고, 클러스터간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정 작업(coordination), 수원국 주도 하의 활동 및 감독이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

- \* 5개 클러스터 (붙임 참조)
  - 1)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 2) Country System,
  - 3) Transparent and Responsible Aid
  - 4) Assessing Progress
  - 5)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 라.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2011년) 개최

- 우리나라는 회원국간 컨센서스에 의하여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2011. 10 예정)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동 회의에 150여 개국 정상 또는 각료급 인사를 포함,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 ADB는 아시아 국가의 HLF 개최에 의의를 두었으며, 일본은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이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더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
- 한국의 HLF-4 개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 체제 선진화 및 對 개도국 관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
- HLF-4는 파리선언 및 AAA 이행에 대한 평가, 파리선언 이후 개발 협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 및 범세계적인 개발협력 노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질 예정

### 3. 향후 계획 및 전망

- 원조효과작업반 참여 확대 예상
  - 우리나라가 2011년 HLF-4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작업반의 공동 부의장 및 집행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정되어 작업반 내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동 작업반 활동 참여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HLF-4 개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협력 역할 강화 및 공여국과 수원국간 교량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 신흥 공여국(중국, 인도 등)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됨
- AAA 이행을 위한 지역 논의에 동참 필요
  - 동 회의에서 수원국 주도의 체계적인 AAA 이행 노력 및 지역 포럼을 통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
  - 우리나라도 CDDE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참여하게 되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원조분업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 점검

-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분업원칙 등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 비교우위에 따른 선도 공여국의 지정 및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 원칙은 자칫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전통 공여국들의 원조 독점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동 원칙의 이행이 신흥 공여국의 역할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다음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는 '09. 11. 30 개최 예정

붙임 : Cluster의 주요 활동 계획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mailto:suhmoongy@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Cluster의 주요 활동 계획

Cluster	Task team	주요 활동 계획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Mutual accoun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 개최</li> <li>· Ownership과 개발성과간 상관관계 연구 및 사례 발굴 등</li> </ul>
	Domestic accountability	
	Broad based Ownership	
	Country leadership and capacity development	
Strengthening and using country system	Using country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장애요인 파악을 위한 포럼 개최</li> <li>· 수원국 시스템 개선을 위한 good practice 마련</li> <li>· 수원국과 공여국간 최적 시스템 합의</li> <li>· 수원국앞 tool kit 제공 등</li> </ul>
	Assessing the quality of country systems in a country-led process	
	Effective capacity for reform	
	Accountable and results-driven country systems	
Transparent and responsible aid	Division of la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내 원조분업 원칙’에 기초한 원조 분업 현황 분석</li> <li>· status quo 분석</li> <li>· 공여국간(cross-country) 원조 분업 논의 시작</li> </ul>
	Aid transparency	
	Conditionality	
	Predictability	
Assessing progress on implementing the PD and AAA	Monitoring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PD) and A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rvey 방법론 개선</li> <li>· survey 수행 및 국가별 분석</li> <li>· progress report 발간</li> </ul>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D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Documenting progress for the 4th HLF on Aid Effectiveness	
Partner-led learning and advocacy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MfDR and country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통계 시스템 개발,</li> <li>· good practice 및 sourcebook 제공</li> <li>· 공여국 원조 담당자의 incentive 부여를 위한 good practice 공유 등</li> </ul>
	Good practice and guidance on MfDR	
	Incentives for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Improving results reporting in donor agencies	



## DAC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논의 동향

### 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의 중요성

-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는 중요한 개발 목표일뿐만 아니라 개발 효과를 증대시키는 긴요한 촉매제로 작용
  - 매년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도중 혹은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여성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개도국의 주요 개발 과제 중 하나
  - 또한,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의 여성 역량강화 및 성평등 제고는 유아 교육 및 보건 도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구 소득 증대, 경제성장 등에 기여
    -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5년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산모의 5세 이상 유아 생존률은 40%에 이룸
    - 인도의 고용인력 중 여성 비중이 10% 만큼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8% 성장 전망<sup>22)</sup>
- 공여국들은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부문의 정치적 공약들을 지지<sup>23)</sup>해 왔으나, 동 이슈의 cross-cutting 이슈로서의 한계 및 취약한 공여기관 역량으로 인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2. 관련 주요 논의 내용

#### 가. MDG 세 번째 목표 -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 2008 MDG 보고서는 2005년까지 성평등과 의무교육 목표를 맞추지 못한 국가가 113개 국가에 이르며 이 중 18개 국가만이 2015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

22) 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3) 1999년 DAC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 개도국의 1/3은 의회에 여성비율이 10% 이하인 현실도 지적

□ UNIFEM<sup>24)</sup>, 성불평등은 MDG 달성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지적

- 성불평등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의 역량을 위축시켜, 가정과 경제사회에 불평등적이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
- 성불평등으로 여성의 고용기회,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빈곤계층은 경제·환경·정치적 충격에 취약해져 MDG 달성이 요원해 질 수 있음

## 나. 원조 관련 국제적 합의 내용 중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 아크라 고위급포럼과 도하개발재원회의

- 원조효과성에 관한 아크라 고위급포럼<sup>25)</sup>(‘08.9)과 도하개발재원회의<sup>26)</sup>(‘08.11~12)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국제적 합의 마련
  - 아크라 행동강령: 성평등은 “생계가 곤란한 여성과 남성, 유아들의 삶과 그들의 잠재성에 영구적인 영향을 줄 초석”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공여국과 파트너국이 “성평등 및 인권, 장애, 지속가능한 환경 이슈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준수하며 각각의 개발정책과 사업을 일관성 있게 기획·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
  - 도하선언: 성 주류화의 공식화 및 개발정책에의 실현 필요성 재차 강조
    - ‘99~’03년간 원조액의 20%(31억불)가 성평등 분야로 배분되었으나, ‘05~’06년에는 30%(93억불)로 증가해, 일부 공여국들은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혁신적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24)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유엔여성개발기금

25) the Accra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6) the Doha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원조효과성 및 성평등,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DAC 행동원칙<sup>27)</sup> ('08.12 채택)
  -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
    - 성평등 관련 전략<sup>28)</sup>에 기초를 둔 빈곤감축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을 가진 파트너 국가를 지원
    - 파트너 국가의 의회, 지역정부, NGO,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빈곤감축전략 및 기타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공여국의 법적 수단, 지역·섹터별 전략 활용 등의 원조조율(alignment)
    -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문제가 실제 정책협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 재무부 및 책임부처 장관의 역량을 증진하여 성과중심의 성인지 예산정책(gender-responsive budgeting) 실현
  - 공여국 및 파트너 국가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 국가·섹터별 성 지표 합동분석 및 평가, 성문제 가미한 빈곤 및 사회영향 평가에 착수
    - 공여국간 최선의 노동 분업(Division of Labour)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젠더전문가 접근성 확대
  - 성과중심의 개발원조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마련
    - 국가와 시민이 성인지 결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
  - 책임 메커니즘 조성, 데이터 수집 작업 등을 통한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
    - 해당 정부가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기구 지원 및 역량개발 노력이 필요

27) 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8.12

28)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 원조 집행 기관이 성평등과 여성 역량개발 결과에 보다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

## 다. 식량 및 금융 위기와 여성

- 최근 식량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금융위기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세계 빈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경제위기는 농업·식량안보 및 고용, 소액투자 접근성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위기가 여성과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면 빈곤문제 악화 및 향후 개발 저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여국간 공동 대응이 필요
- 위기에 대처하는 대응전략
  - 여성에게 공공노동프로그램 등 고용기회 제공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소득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 생산자를 위한 **financing resource**를 계속 공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 3. 시사점

- '09. 5 DAC 고위급 회의에서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 개발정책·사업이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문제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아크라 행동강령 이행의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
  - 성평등 이슈를 정책 및 사업에 적용하는 파트너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

- 우리나라도 동 논의 동향에 부합하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
- KOICA는 최근 7개 중점사업분야 중 하나인 “환경 및 기타”를 “환경 및 여성”으로 전환했으며, UNEP 한국위원회는 “환경평가 업무에서의 성별정책의 중요성<sup>29)</sup>”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여성 관련 내용을 원조 사업에 mainstreaming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EDCF 원조에서 교육 및 보건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의 가치를 사업 수행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자 료 : 1.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From Rhetoric to Results. 2009.2  
2. 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8.12

작 성 : 김 지 은, [julliee@koreaexim.go.kr](mailto:julliee@koreaexim.go.kr)

목차보기

29) “ Mainstreaming Gender in Environment Assessment and Early Warning”(UNEP 한국위원회 발간)은 환경정책수립과 조기 경보 과정에서 여성을 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

ODA 단신 4

## 2009 DAC 통계작업반(WP-STAT) 비공식회의 주요 내용

### 1. 회의 개요

- OECD DAC 산하기구(Subsidiary body)중 하나인 WP-STAT(Working Party on Statistic)<sup>30)</sup>는 ODA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통계수집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통계작업반회의(보통 6월)와 비공식 통계작업반회의(보통 2월)를 개최
  - 통계작업반회의는 ODA 개념 정의, 분류기준 마련, ODA 적격 수원국 및 국제기구 선정 등의 작업을 논의하는 공여국 ODA 통계담당자간의 실무회의임
  - 2009 비공식 통계작업반회의는 2009. 2. 2 신규 원조형태 분류안, 다자간 원조 기구 선정 기준 등을 주제로 개최됨

### 2. 주요 논의 내용

- 신규 원조형태 분류안(New typology) 일부 수정
  - 신규로 포함되는 원조 형태('Bilateral core contribution and pooled programmes and funds', '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등)의 정의 등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
  - 신규 분류안 표에서 Loan과 Equity의 위치를 행 또는 열로 할지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최종 분류안은 5월 본회의에서 확정기로 함
  - 신규 원조형태 분류안 도입 이후, DAC의 통계수집은 현 8개 테이블 및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에서 궁극적으로 DAC 1 테이블과 CRS++ 수집으로 간략화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생략되는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Validation 테이블을 새로 도입하는데 회원국간 컨센서스 형성

30) WP-STAT은 수원국과 다자간 원조기구에 대한 자금 흐름의 통계정보를 수집·검토·개선하며, ODA 적정성 여부, 통계보고의 기준 및 용어 정의, 통계자료의 정확성, DAC 통계자료 생산 등에 관해 DAC에 권고

□ 다자간 원조 기구 선정 기준 마련

- 그간 건별로 다루어졌던 다자간 원조 기구 선정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자간 원조 기구를 선정하는 기본원칙을 Mandate, Activities, Budget의 세 가지로 정함
  - 다자기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구의 설립 목적인 Mandate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MDG 등의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임
  - 단, Normative work(환경관련 협약, 노동관련 표준 등 국제적인 standards/regulations을 만들고, 동 표준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각종 표준의 이행을 위한 활동(Activities)을 개도국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격기구로 인정
  - Mandate가 적합한 기구에 대해서는 활동(Activities)이 수원국의 benefit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 평가, 예산(Budget) 중 어느 정도가 ODA 적격인지 (Development share)에 대한 평가로 최종 적격성 판정
  - Development share 계상을 위한 예산 선정시에는 ‘Unearmarked contribution’ (공여국이 실질적으로 통제 할 수 없는 예산)을 대상으로 해야 함
  - Development share에 따라 활동의 일부만을 ODA로 인정하는 coefficient 도입
- 단, 실질적으로 Development share를 통해 얼마를 ODA 적격 금액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System of thresholds’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
  - 독일 등의 국가는 Development share는 작지만, 절대 규모가 큰 기관(예, UNDPKO)을 포함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
  - 스페인안은 예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제외하도록 함
  - DAC 사무국은 coefficient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

System of Thresholds (스페인 제안)

	Category 1 D < U\$50M	Category 2 D ≥ U\$50M
100% ODA	%D ≥ 75%	%D ≥ 90%
Coefficient	Not applicable	%D: 5%–90%
Not ODA-eligible	%D < 75%	%D < 5%
Remove from List	%D < 50%	%D < 5%

\* D : Developmental budgets



□ 기타

- 다자원조기구들의 원조 통계 제출 현황이 미비하여, DAC 사무국은 회원국이 다자기구 board에 좀 더 성실한 통계보고를 촉구할 것을 당부
- 현재 수자원/위생 분야에서 수자원과 위생이 구분이 안되는 점을 감안해, 동 분야를 세분화하기로 함
- 캐나다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표시하는 DAC 7b 테이블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여국내 비용(development awareness 등)을 제외하자고 주장
- DAC Senior Level Meeting에서 의결된 기후변화관련 통계수집(Adaptation marker 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ENVIRONET과 공동 작업반 구성

□ 차기 회의 일정 및 주요 논의 내용

- 제60차 통계작업반 공식회의 : '09. 5. 5~6
- 주요 논의 내용
  - 신규 원조형태 분류안(New typology) 형태 확정
  - 다자기구 선정 기준(System of thresholds) 확정
  - 2009 ODA flow 작성을 위한 적격 다자기구 선정 등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 and Process

### 1. DAC Peer Review의 목적

- DAC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기반을 두어 매년 DAC 회원국에 대한 Peer Review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은 4~5년에 한번씩 Peer Review를 수감
  - Peer Review의 목적
    - 회원국들의 국제적·국가적 목표와 DAC의 목표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감독 및 평가
    - 상호 학습을 통한 DAC 회원국들의 원조 성과 향상
    - 모범사례 구축 및 회원국들의 조정(co-ordination)작업 촉진

### 2. Peer Review Content Guide

- DAC Peer Review 실시단(이하 실시단)은 동 지침에서 회원국의 전략 오리엔테이션, 정책 일관성, ODA 규모, 채널 및 배분, 원조 조직현황, 원조효과성 등 5개 카테고리에 대해 Headquarter issues와 Field level issues로 구분하여 분석 초점 방향을 제시

#### 가. 전략 오리엔테이션 (Strategic Orientations)

- 실시단은 각 회원국의 개발협력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감독 및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내용
Headquarter Issues	개발협력을 위한 역사적 또는 법적 근거 및 외교정책에의 반영
	개발협력에 대한 비전, 동기 및 중점 목적
	수원국의 선정 방식 (국가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갈등 분석, exit strategies 유무 등)
	cross-cutting issues 구분 및 특별 정책 지침 평가 등
	개발협력정책에의 국제적 공약(파리선언, AAA 등) 및 빈곤 감축전략 등의 반영 및 이행 평가
	취약국가 및 분쟁지역 국가들을 고려한 범정부적 접근방법
	개발 이슈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 및 지지 수준
	sub-national government의 국가정책수립 참여
	DAC 권고사항의 이행 (이전 Peer Review 이후 주요 변화)
Field Level Issues	지역적 차원에서의 원조 조정 기능 및 정책
	Headquarter 원조정책의 현지(Field) 반영 정도
	현지에서의 취약국가 및 분쟁지역 국가에 대한 원조정책 평가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지원을 위한 현지에서의 원조 집행 등 평가
	지역적 협력 구축을 위한 지역기구(현지 대사관 포함)들의 역할
	시민사회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 나. 정책 일관성 (Policy Coherence)

- 실시단은 어떠한 요소가 각 회원국의 정책 일관성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고, 각 정책들에 대해 회원국들이 기울인 노력(national level) 및 수원국 내에서 공여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field level)을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내용
Headquarter Issues	<b>Political Commitment</b> - 정책 일관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우선분야 설정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대중 인식 및 지원 도모를 위한 노력
	<b>Co-ordination Mechanisms</b> - 정책수립과정에서의 핵심 참여 기관 및 기관간 조정 메커니즘

	- 조정 메커니즘의 명확한 임무 및 책임
	<b>Capacity and Monitoring</b>
	- 정책 일관성 문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력 및 충분한 자원 보유 여부
	- 원조 체계의 효율성 감독을 위한 메커니즘 (투명성, 인센티브 구축 등)
	- 환경·기후변화, 무역, 이주 문제에 대한 제도적 구조의 효율성
Field Level Issues	수원국내 정책 일관성을 위한 대사관/현지사무소 내 범정부적 노력
	정책일관성의 영향에 관한 수원국, 시민사회, 현지 기관 직원들의 의견 및 증거 수집과 피드백

#### 다. ODA 규모, 채널 및 배분 (ODA Volume, Channels and Allocations)

- 실시단은 회원국들의 ODA 관련 공약들에 대한 이행성과를 토대로, 원조 방식의 선택 및 원조 배분의 합리성, 설정된 목표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원조 규모에서의 주요 변화 등을 검토

구 분	주요 평가 내용
Headquarter Issues	<b>Overall aid volume</b>
	- ODA target, ODA/GNI 비율 목표 달성 계획 및 주요 트렌드
	- ODA 주요 구성요소 및 분포 (채무구제의 비중 등)
	- 취약국가 및 분쟁지역국가들에 대한 기금운영방식
	- 수원국에게 승인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정기적,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b>Bilateral Channels</b>
	- 원조의 예산분배 방식(분야별, 주제별 우선순위) 및 주요 원조 수단
	- 빈곤 감축을 위한 승인(commitment)의 예산 반영 및 수원국의 선택 기준
	- 지방정부가 집행한 원조의 통계 수집 방법
	<b>NGOs and Civil Society</b>
	- national and southern civil society 와의 관계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
	- NGO에 대한 감독 및 평가
	<b>Multilateral Channels</b>
	- 다자간 원조 전략 및 다자·양자 원조간 조정문제 해결
	- 다자간 원조기관 평가 및 현지에서 다자간 원조 수행의 피드백 방식
	- 다자간 원조 기관들의 분포 (비중, 랭킹, 트렌드)
Field Level Issues	수원국의 원조 규모를 설정하는데 대한 현지 사무소의 역할
	원조의 배분 및 주요 원조 수단(비중, 주요 변화 등)

## 라. 원조 조직 현황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본 단원은 회원국의 원조체계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시단은 원조기관 조직구성 및 관리 목표 달성 계획 및 능력, 자원의 효과적 사용, 위임 권한 등에 대해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내용
Headquarter Issues	<p><b>Organis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법적 원천(origin)이 무엇이며, 효율적·효과적 운영 도모를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부여하는지 여부</li> <li>- 개발협력 관련 기관 및 조직들의 역할, 관계, 역할분담 등</li> <li>- 정부 정책방침 및 국제적 공약 실천을 위한 기관들의 경영 플랜 및 인적자원 관리</li> <li>- 원조효과성에 부합하여 현지 기반의 원조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기관 형성, 권한 위임(decentralisation)</li> <li>- cross-cutting issues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구조의 범위</li> </ul> <p><b>Manag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국가 프로그램에 수원국의 전략 및 정책 반영 여부, Result-based management approach 사용, 개발예산의 계획, 승인 및 관리</li> <li>-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장기개발로의 전환이 어떻게 계획되고 관리되는가</li> <li>- 행정비용의 보고방식</li> <li>- 인력 고용의 적절성(규모, 기술, 배치 등), 고용계획, career track, staff management performance</li> <li>- 직원 채용 및 외부 직원(현지, 제3국, 취약국 등)에 대한 고용 정책</li> </ul> <p><b>Evalu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및 책임성 : 평가정책, 평가절차의 독립성, 원조효과 목적에 맞는 평가결과 측정</li> <li>- 자원 : 평가를 위한 재정적(예산 등), 인적 자원의 적정성, 평가의 공개</li> <li>- 교훈 : 결과(outcome)와 파급효과(impact) 중심의 평가, 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한 평가 과정, 평가 결과의 정책결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행에의 반영</li> </ul>
Field Level Issues	<p><b>Organis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개발, 예산분배, 집행 결정에 대한 현지 사무소의 권한, Head quarter와 현지사무소 간의 책임 분배, 의사소통, 정보교환 등</li> </ul> <p><b>Manag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간 협상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수원국 정부와의 양자간 개발협력을 위한 구조(Framework agreement, Project-related agreement 등)가 무엇인가</li> </ul>

- 수원국내 직원 배치, 현지 및 제3국 직원 채용정책 등
  - 운영상 효율성 평가, 현지 직원들에 대한 배치 이전 교육 제공 등
- Evaluation**
- 평가 실행에 대한 권한 위임정도, 평가의 독립성 등
  - 수원국의 현지 평가자 활용, 수원국 주도 혹은 합동 평가의 범위, 다른 공여국들에 의한 평가 정보의 사용 범위 등
  - 결과·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피드백, 최근 평가 사례 등
  - 평화구축, 갈등예방과의 연관성 및 측정지표 등

### 마. 원조 효과성 (Aid Effectiveness)

□ 본 단위에서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에서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들의 원조 프로그램을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내용
Headquarter Issues	<p>파리선언 및 AAA 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기관들의 개혁·변화 programme-based approach 사용(원조의 66%이상) 및 국가신용 시스템(fiduciary system) 사용(2010년까지 50% 이상)에 관한 공약 이행여부</p> <p>정부, 개발협력관련 기관, 의회 및 시민사회간 행동계획 공유</p> <p>원조효과성에 관한 직원들의 지식과 이해수준, 내부적 동기유발 등</p> <p>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효과 접근방식의 차별성 등</p> <p>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대한 향후 계획</p> <p>수원국내 상호평가검토(mutual assessment review) 과정 등</p>
Field Level Issues	<p><b>Ownershi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의 개발정책 및 전략에 대한 리더십 및 이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 등</li> <li>- 시민사회와의 정기적 대화 및 협력 등</li> <li>- 공여국은 취약·갈등 문제에 대한 부처간 joint work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에 어떻게 지원하는가</li> </ul> <p><b>Align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전략간, 다양한 프로그램 사이클간의 일치성 등</li> <li>-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사용 정도(public financial system, accounting, auditing, results and monitoring, 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등)</li> <li>- 원조 예측성 제고를 위한 multi-year frameworks 사용, 수원국 앞 원조 흐름에 대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 등</li> </ul>

**Harmonisation**

- 조정 메커니즘에의 참여 및 수원국의 리더십 증진 기여 정도
- 시민사회의 정책협의, 프로그램 계획·감독 등의 참여 제고를 위한 수원국 정부와 현지 사무소의 협력
- 계획, 기금조성, 지출, 감독, 평가 및 활동보고 등과 관련하여 harmonised and collective한 기회를 제공하는 common arrangement는 무엇인가
- 원조분업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결정 시 비교우위 고려 방법(leading sectors/themes, 타 공여국으로의 권한위임 등)
- 원조 절차의 조화, 교훈 공유 등을 위한 타 공여국들과의 협력

**Delivering and accounting for development results**

- 수원국의 개발전략 감독·평가 시스템 구축 및 사용 정도 및 이에 대한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 등
- Development effectiveness assessment framework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system(questions directed to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f the partner country and other donors at field level)**

- 전반적 개발협력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 원조효과 아젠다 이행을 통한 delivering aid의 거래비용 감소
- 원조효과 아젠다 이행을 통한 country level에서의 기관의 역량 및 책임성 강화

**바. Special Issues**

- DAC은 2년마다 현재 개발협력과 관련된 이슈들을 선택하여 회원국의 활동을 검토해 봄으로써, 정보 및 경험 공유
-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에서도 널리 인식된 수원국의 역량개발 주제가 DAC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의제로 논의 중인 만큼, 본 단원에서 각 회원국의 역량개발 노력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09~10년 두 번째 주제로서 1)Agriculture, high food prices and donor responses와 2)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를 선택



## 1) Capacity Development

- Key Considerations for Peer Reviewers
  - 결과(output) 위주의 검토
  - 수원국의 역량개발 강화를 위해 공여국이 제공한 프로그램 검토
  - 취약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engagement 고려
- 역량개발의 정의와 이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 이해
- 역량개발에 관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전략 평가
- staff incentive, skills profile, operation procedures 등 제도 평가
- cross-cutting issues 반영 평가
- 현지 기관·컨설턴트와의 협력, 수원국 개발정책과의 일관성
- 감독, 평가, 피드백

## 2) Agriculture, high food prices and donor responses

- 정책 구성에 있어서 DAC과 OECD의 guidance 반영
- 수원국 식량안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여국의 정책 평가
- 수원국 정책과의 일관성, 감독 및 평가시스템

## 3)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전반적인 정책 검토 (cross-cutting issues 연관성, 다른 환경이슈들과의 연관성 등)
- 정책수립 참여자들의 인식 증진
- 예산 관련 검토 (예산적 제한, 예산 편성규모 등)
-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EA) 및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에 대한 지침 관련 평가 및 현지 시행 평가
- 독립적 감독 및 평가 시스템
- 기후변화 관련 교육 훈련 및 참여 정도

## 사. Humanitarian Assessment Framework (ANNEX A) (Revised)

### 인도주의적 정책(Humanitarian Policies)

- 인도적 지원 정책의 목적 및 목표, 개발협력 approach와의 조화
- Good Humanitarian Donorship(GHD) commitment의 반영
-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의거한 인도주의원칙 및 법적 공약 반영
-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기금 배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설정
- 정책프레임워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계획, 이행, 감독 및 평가 단계에서 수혜자들의 참여 고취
- 인도주의적 시스템 개혁과정 및 파트너십 원칙 지원에 기여

### 인도적 지원을 위한 **financing** 원칙

- 예산의 규모, 수요에 기반한 자원배분 방법
- 인도적 지원의 유연성 및 시기적절성(구체적 목표, 성과, funding flow의 예측성 등)
- 인도적 지원에 대한 earmarking level(unearmarked, low earmarking, high earmarking)

### Promoting standards and enhancing implementation

- Humanitarian worker들의 안전 및 신변보장을 위한 지원
-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증진을 위한 집행기관 지원 방법
- 인도적 지원 기관의 역량강화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 인도적 지원 실행에서 시민사회조직의 primary position

### 교훈 및 책임성(Learning and accountability)

-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의 범위, 연구결과 및 권고사항의 보급
- DAC의 평가기준 등 반영, 국제적 인도적지원에 대한 합동평가 참여 범위
- 인도적 지원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보고의 요구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평가

인도적 지원의 조직 및 관리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구조 혹은 메커니즘
- 인도적 지원 관련 담당 부서의 staffing level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능력 보유 여부(Headquarter and field level)
- Media Strategy(미디어와의 관계, 대중인식제고를 위한 미디어사용 등)

Cross-cutting themes

- Cross-cutting 이슈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취약성들이 각 지원 단계마다 고려되고 있으며, 'do no harm' 원칙이 인도적 지원에 수용되어 있는지 평가

### 3. Peer Review Process

- DAC 위원회는 프로그램 규모(size), 복잡성(complexity), 시사성(lessons), 언어(language), 지역(geography) 등을 기준으로 실시단을 선별하며, 실시단은 DAC 회원국 대표 1~2명, 위원회 대표 2~3명, 인도적 지원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

\* 인도적 지원 전문가는 Peer Review 중 [Annex. Humanitarian assistance]에 대한 분석을 실시

#### 가. Preparation and planning of the review

- 수검국(reviewed country)은 실사 30일 전까지 원조체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모랜덤(Memorandum)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실시단과 수검국간 회의(consultation)의 기초 자료로 쓰임
- 수검국은 실사 3개월 전에 연간 통계 보고서를 DAC 통계감독반(Statistical And Monitoring Division)에 제출해야 함
- 수검국은 실사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자발적 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의 형태로 제공

- DAC 회원국은 관찰자(observer)로 Peer Review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신 사전에 실시단 및 수검국의 승인을 받고 DAC이 사전통보를 해야 함

## 나. Fact-finding, analysis and report writing

### □ 수검국과 실시단과의 회의(consultation)

- Senior Secretariat official의 지휘 하에 주요 원조기관들의 본부(headquarter) 및 현지 사무소(field level)를 실사
  - Capital/Headquarters : 4~5일간 수검국 원조기관 관계자(정부 유관부처, 원조제공 기관, 의회, NGO 등)들을 직접 만나 원조체계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조사하고 closing session에서 실시단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수검국과 토론
  - Field level :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실시단은 1~2번 1주일간의 현지 사무소 방문, 수검국의 개발협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실시(국별 프로그램의 효과 및 연계성 등은 평가 목적이 아님)
- 현지 사무소 방문 보고는 Peer Review의 부록(annex)에 실리게 되며, 현지 사무소 2곳을 방문할 경우, 1곳의 실사는 본점(headquarter) 실사 전에 이루어져, 현지에서 발견하거나 관찰된 사항들이 본점 실사의 대상이 됨

### □ 보고서 초안 작성 (Part 1, Part 2)

- Part 1은 주요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것으로 조사관(examiners)들과 Secretariat이 함께 작성하며, 작성 후 Peer Review meeting 2주 전 OLIS\*에 게시됨

\* OLIS : OECD's Committee Information Service for Government

- Part 2 보고서와 달리 수검국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LIS에 게시

- Part 2는 Secretariat Report로서, Secretariat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사관들의 의견을 받은 후, 1~2주간 수검국의 확인(factual check of the text)을 거치게 되며, 최종 보고서는 Peer Review meeting 4주 전 OLIS에 게시

#### 다. The Peer Review Meeting

- Peer Review meeting에서는 DAC 의장의 주재 하에 조사관들이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DAC의 권고사항들을 제안하게 되며, 위원회는 각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토의 후 권고사항 승인
- 수검국 대표단은 DAC 파견 직원(delegate)을 포함한 관련 기관 직원(head or deputy head급)들의 수행을 받게 되며, 대표단은 meeting에 참여하여 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시 및 토론에 참여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질문 및 코멘트,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토론에 참여

#### 라. Approval and Publication

- Peer Review meeting 후 Editorial session에서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 Part 1을 수정하고, Part 2도 Part 1 내용과 일관성 있게 수정
  - 수검국은 표현 수정이나 조사관들이 제안한 결론 혹은 권고사항들 중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Peer Review meeting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반드시 다른 회원국들이 인정한 이슈들만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보고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최종 수정된 보고서는 OLIS 및 DAC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DAC Journal(분기별 발간)에도 실리게 됨

## 마. Follow-up

- DAC 의장은 Secretariat 대표와 함께 Peer Review 후 18~24개월 후 수검국을 방문하여 DAC 권고사항 이행 등을 검토하고, 수검국은 방문 전 미리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DAC 의장은 방문 후 결과(conclusions)를 위원회에 제출

자 료 : 1.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 [DCD/DAC(2008)46/REV2]  
2. Revised Humanitarian Assessment Framework for DAC Peer Reviews [DCD/DAC(2008)48/REV2]  
3. Information Note on the DAC Peer Review Process [DCD(2007)5]

작 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mailto:suhmoongy@koreaexim.go.kr)

목차보기

##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와 현황

### 1. '98년 프랑스 원조체제 개혁의 목적과 특징

- '96. 2월 프랑스 총리의 원조체제 재구성 계획 발표 이후 '98. 2월 국무회의의 승인 아래, 분산된 업무운영기능 통합, 원조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원조체제의 개혁을 단행

#### ○ 개혁 목적

- 우선연대국가군(Priority Zone of Solidarity, ZSP)를 중심으로 원조의 선택적 집중 강화
- 원조제공기관간의 조정 강화 및 원조 실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시스템 구축
- EU 등 다자기관 원조와 양자 간 원조와의 연계 강화
- 정부에 의한 원조 활동과 NGO간의 협력 강화

#### ○ 특징

-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와 관련한 부처 간 조정기구로서, 프랑스 ODA 정책과 목적의 방향을 수립하는 기관인 국제개발협력정부간위원회(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CICID) 설립
- 구 프랑스 식민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협력부(Ministry of Co-operation)의 기능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흡수·통합하여 기존 체제의 지역적 구분을 없앴
- 경제재무산업부(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現 경제산업고용부)와 외교부를 두 축으로 하여 원조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재조정하고, 프랑스개발기구(AFD)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께 부여함.



- 프랑스 헌법상 의회는 예산의 확대 혹은 축소를 요구할 수 없는 제한된 예산감독능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협력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음

- 하지만 LOLF\* 시행 후, 개발원조를 포함한 예산에 대한 감독 권한이 커졌으며, parliamentary delegation for co-operation을 통해 대외 정책의 감독 및 평가에도 의회의 참여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에 관한 입법 투표 등을 통해 의회의 영향력이 개선됨

\* LOLF : Constitutional Bye-law on Budget Acts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2. 現 프랑스 ODA 운용체제 및 조직

### 가. ODA 운용체제

□ 프랑스 ODA 운용체제는 경제산업고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 구조로서, '98년 개혁 이후의 원조 운용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기능에서의 원조 관련 부처들의 전문화 및 각 기관들로 원조 실행을 위임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정부간위원회(CICID)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한 핵심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경제산업고용부와 외교부는 원조정책의 수립 및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기관(pillars)으로, 경제산업고용부는 경제적·상업적 목적의 유상원조를, 외교부는 외교적 목적의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AFD에 대한 공동 감독권한을 지님
- 프랑스개발기구(AFD)는 중추적 원조 집행 기관(central operator)으로서, 경제산업고용부와 외교부의 원조자금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

□ 무상원조 지원체계

- 외교부는 우선연대국가군을 중심으로 외교적 목적의 문화·기술협력 및 우선 연대기금(Priority Solidarity Fund, FSP) 등을 통해 수원국의 공공부문 제도 정비를 중점 지원
- 경제산업고용부는 민간부문지원기금(FASEP)을 통해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협력 등 무상원조 실시
- 프랑스개발기구는 자체 계정으로 의료·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성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실시

□ 유상원조 지원체계

- 경제산업고용부는 신흥국가지원기금\*(Reserve for Emerging Countries, RPE)을 통해 경제파트너국가군(ZPE)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성 차관 제공
  - \* RPE : 프랑스기업의 상업적 목적과 개도국의 산업개발 수요를 동시에 충족 시키고자 신흥개도국에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Protocol project-aid)으로, '07년 총 6개 프로젝트에 대해 361백만 유로를 승인하였음.
- 프랑스개발기구 역시 자체계정을 통해 우선연대국가군을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

나. 주요 조직

□ 국제개발협력정부간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CID)

- CICID는 '98. 2월 프랑스 원조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실질적인 정책수립기구로서, 프랑스의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 정책의 목적 및 가이드 라인 등을 제시하고, ODA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부처간 조정업무를 수행

- CICID의 역할
    - ZSP(Priority Zone of Solidarity)의 설정
    - 다자간, 양자간 개발협력의 목적과 방법 설정
    - global programming에 대한 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역 및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원조수단간 일관성 유지
    -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의 감독 및 객관적 평가
  - CICID의 위원장은 총리이며, 개발원조와 관련된 12명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중 경제산업고용부(DGTPE), 외교부(DGCID), 이민부(Ministry of Immigration,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Co-operative Development, MIIDS)이 co-secretariat 역할 수행
  - CICID는 자주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연간 1회 이상 개최), 이를 보완하기 위해 co-secretariat meeting을 자주 실시하여(매월 1회 개최) 부처 간 협력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DAC은 Peer Review(2008)를 통해 CICID가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나, 정책 일관성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지적, 이를 위해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대한 명확한 임무(mandate)를 가진 부처간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
- 경제산업고용부 (Ministry of the Economy, Industry and Employment, MINEFE)
- 경제산업고용부는 경제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산업고용부 내 원조관련 업무는 국고경제정책총국(Directorate-General of the Treasury and Economic Policy, DGTPE)이 담당
    - DGTPE는 5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ODA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반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 재무,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 ODA와 관련하여 DGTPE 내 5개부서 중 다자간정책개발부(Department of Multilateral Affairs and Development)가 외교부(DGCID)와 함께 CICID의 co-secretariat으로서 전반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채무구제, 통화협력 등 다자간 원조와 관련한 개발은행 및 thematic funds 관리

- 경제산업고용부는 양자간 ODA 자금의 약 10%를 관리하고 있으며, IMF, World Bank 등 개발원조 관련 금융기관에서 자국 대표 역할 및 DAC에 ODA 관련 보고 등을 담당하고 있음
- DAC의 Peer Review(2004)에 따르면, 경제산업고용부는 다른 DAC 회원국들에 비해 재무부의 전통적 역할 이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

#### □ 외교부(The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MAEE)

- '99년 협력부와 외교부내 협력업무를 관장하던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Relations)을 통합하여 협력업무를 총괄하는 대외협력개발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GCID)를 설치
  - DGCID는 DGTPE와 함께 CICID의 co-secretariat으로서 원조 정책을 조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법 시행, 거버넌스 등 주권 영역(Sovereign sectors)과 문화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양자간 ODA 자금의 약 25%를 관리하고 있으며, UN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보건의금도 관리

#### □ 프랑스개발기구(French Development Agency, AFD)

- AFD는 중추적 원조집행기관(pivotal operator)으로서, '98. 4월 프랑스개발금고(CED)를 승계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특수금융기관이지만 상당부분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 AF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감독위원회로서, 통상 경제관련 고위공무원이 의장으로 임명되고, 위원은 경제산업고용부 2명, 외교부 2명, 이민부 1명, 의회대표 3명, AFD 대표 2명, 그 외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AFD의 지원 승인(commitments), 조건, 재무보고 등을 승인
  - AFD 총재는 경제산업고용부 장관의 추천(proposal)에 따라 정부령으로 임명되며, 그 운영 및 업무집행을 위임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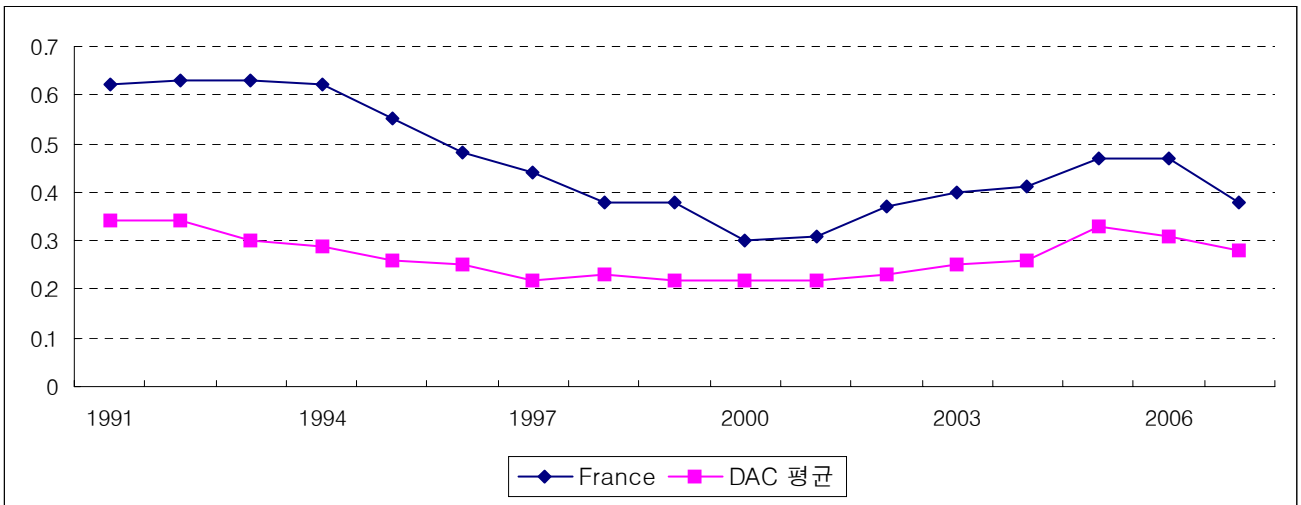
- ※ 現 AFD 총재는 Jean-Michel Severino로, 전 경제산업고용부 경제감찰관(General Inspector of Finances) 출신임
- AFD 감독위원회 의장이 통상적으로 경제산업고용부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과 AFD 총재가 경제산업고용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임명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FD는 외교부보다 경제산업고용부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임
- AFD의 원조 수단으로는 차관(loan), 프로젝트성 무상원조(grants-projets),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및 채무·개발계약(debt reduction and development contracts) 등이 있으며, 자회사인 PROPARCO에 대한 지분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을 지원
- AFD의 운영자금은 외교부의 증여, 시장에서의 정부보증부 차입금(재무부 이차보전) 및 일반 차입금(無 정부보증), 재무부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
- DAC은 Peer Review(2008)를 통해 AFD의 원조집행기구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AFD의 원조 집행기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

### 3. 원조 동향 통계 분석

#### 가. 전반적인 원조 규모

- 프랑스는 '07년 순지출 기준 약 99억불(DAC 전체 ODA의 9.6%)의 ODA를 공여하여 원조규모 면에서 22개 DAC 회원국 중 미국 및 독일에 이어 제 3위의 원조규모를 가진 주요 원조공여국임
- 프랑스는 '02년 몬테레이 회의에서 ODA/GNI를 '07년까지 0.5%, '12년까지 0.7%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07년 0.38%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결국 '15년까지 0.7% 달성으로 연기
-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적자('07년 GDP의 2.4% 이상)로 인한 예산 제약으로 인해 ODA 예산 증가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채무구제(debt relief), 새로운 금융수단(financing mechanism),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등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음

### ODA/GNI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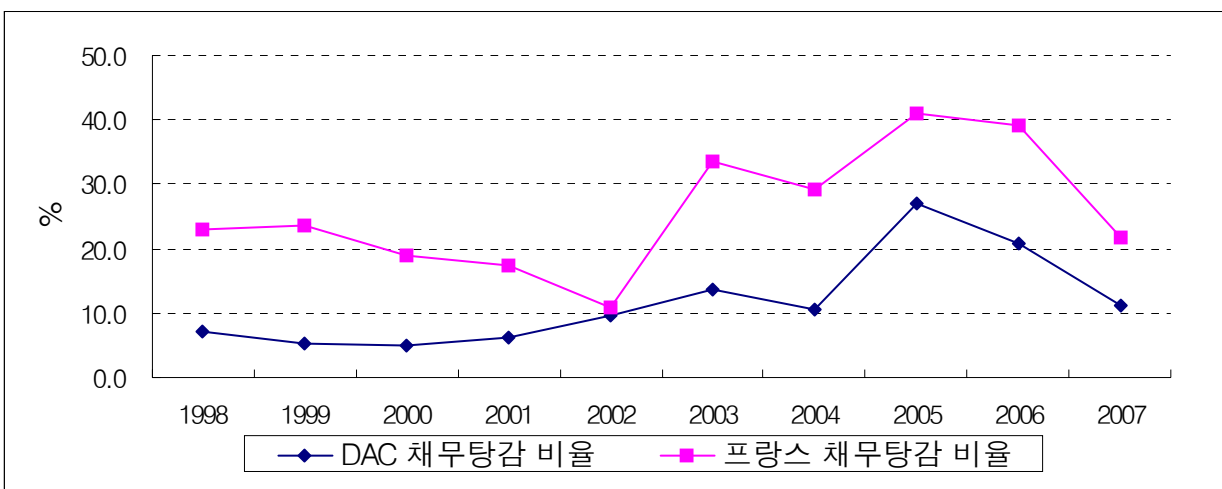
#### 나. 프랑스 유·무상 원조의 구성요소 분석

□ 프랑스는 '07년 약 17억불의 채무를 탕감하여 양자간 ODA의 약 22% (총지출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탕감이 양자간 ODA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던 '0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임

※ 프랑스 채무탕감 추이(백만불) : '05년(3,498) → '06년(3,683) → '07년(1,683)

※ DAC 채무탕감 추이(백만불) : '05년(24,999) → '06년(18,600) → '07년(9,624)

#### DAC(전체)과 프랑스의 채무탕감 비중 추이



- DAC은 채무탕감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ODA 규모의 감소를 우려, 현 ODA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 수립 필요 제기
- 프랑스는 채무탕감 방식으로서, 상환(예정)자금을 빈곤감축 프로그램에 의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는 대환제도인 '빈곤감축 및 개발 계약(Contracts for Debt Reduction and Development, C2D)'을 운용
  - C2D는 HIPC Initiative에 의해 completion point에 도달한 수원국과 프랑스 정부간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기존 상환(예정)금액 회수후 동일 금액을 집행(refinance)
  - 동 자금은 글로벌 예산지원(global budgetary assistance)과 분야별 원조(sector assistance)의 형태로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 C2D는 외교부와 경제산업고용부의 공동 책임 하에 AFD에 의해 집행되며, 현재 20여 개국과 약 37억 유로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07년 프랑스의 유상원조는 양자 간 원조의 약 19%(승인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DAC 회원국들과는 달리 '04년 이후 양허성 차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양허성 차관의 규모 및 비중

(승인 기준,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Loans	577 (18%)	782 (16%)	1,399 (19%)	871 (12%)	1,228 (14%)	1,349 (14%)	1,603 (19%)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차관(Loan)은 주로 AFD를 통해 중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및 도시개발(38%), 환경 분야(40%)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으며, AFD의 non-sovereign loan('07년 AFD 전체 승인금액의 60% 차지) 및 sovereign loan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AFD의 sovereign loan은 post-HIPC 국가들(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등)에 대한 경기조정차관(countercyclical loan)\*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임

\* Countercyclical loan : 프랑스에서 새로 도입한 원조 수단으로서,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 없이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 AFD는 차관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으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관의 규모를 늘려왔으며, 프랑스는 차관의 확대와 더불어 양허성 수준 조정을 통해 자원의 최적 사용 방법을 추구

○ DAC은 통상적으로 최빈국보다는 상환능력이 있는 국가들을 위주로 제공되는 차관의 특성상, 원조의 지역·분야별 배분 전략은 수원국의 필요와 국가전략을 고려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

○ 또한 차관은 향후 상환 시점에 이르러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ODA 규모를 유지시키기 위해 증여와 차관의 적절한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고

### 원조형태별 ODA 규모 추이

(총지출 기준, 백만 달러)

원조형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양자간 원 조	유상원조	466	837	1,235	616	818	959	1,003
	양허성 차관	466	837	1,235	616	818	959	1,003
	무상원조	2,920	3,874	5,725	6,067	7,707	8,422	6,690
	프로젝트원조	327	357	393	510	604	533	610
	프로그램원조	120	105	80	124	120	418	574
	기술협력	1,337	1,525	1,934	2,340	2,364	2,805	2,897
	채무탕감	593	507	2,329	1,960	3,498	3,683	1,683
	NGO 지원	27	29	28	35	40	42	51
소 계	3,387	4,711	6,960	6,683	8,524	9,381	7,693	
다자간 원 조	출자·출연	1,530	1,849	2,048	2,885	2,747	3,193	3,684
	양허성 차관	196	160	149	233	258	190	121
	소 계	1,725	2,008	2,196	3,118	3,005	3,383	3,805
총 계	5,112	6,720	9,156	9,800	11,530	12,764	11,498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프랑스의 다자간 원조는 '01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07년에는 전체 ODA의 약 33%(총지출 기준)를 차지
- '07년 다자간 원조 중 EC(56.7%), World Bank(14.2%)에 대한 원조가 70% 이상을 차지

### 다자간 원조의 추이

(총지출 기준,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다자간 원조	1,725	2,008	2,196	3,118	3,005	3,383	3,805
UN 기구	115	155	179	190	187	205	235
EC	1,043	1,286	1,311	1,863	1,811	1,938	2,156
World Bank	232	244	293	397	299	456	541
지역개발은행	109	130	156	164	206	207	218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다.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지원

#### '07년 지역별 ODA 규모

(총지출 기준, 백만 달러)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대양주	총계 <sup>주)</sup>
	사하라 북부	사하라 남부					
증여	730	3,045	386	1,643	143	135	6,690
채무탕감	106	810	1	765	-	-	1,683
양허성 차관	330	271	52	228	122	-	1,003
ODA 합계	1,061 (13.8%)	3,316 (43.1%)	438 (5.7%)	1,871 (24.3%)	266 (3.4%)	135 (1.8%)	7,693 (100%)

주) 미배분 금액(전체 ODA의 약 7.9%) 포함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프랑스는 아프리카, 중동, 인도차이나 국가 등 총 55개국으로 구성된 우선연대국가군(ZSP)을 중심으로 원조를 배분하고 있으며, 프랑스 양자간 ODA의 약 57%(4,377백만불)를 아프리카에 집중, 그 중에서도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43.1%의 비중을 차지
- 양자간 ODA에서 15개 최대 수원국\*에 대한 지역 집중화는 '00~'04년 62%에서 '05~'06년 70%로 DAC 평균(73%)에 근접하였으며,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최대 수원국 : 나이지리아, 이라크, 콩고공화국, 모로코, 카메룬, 마요트 (Mayotte), 알제리아, 세네갈, 튀니지, 중국, 베트남,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남아프리카, 말리, 마다가스카르, 터키, 니제르, 왈리스 푸르나 (Wallis & Furuna) 등 15개국
- 프랑스는 주로 아프리카의 최빈국(LDCs)들을 우선적으로 더욱 원조 배분을 집중시킬 계획이며, DAC은 최빈국 및 취약 국가들 중심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적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

#### 라. 양자 간 원조의 분야별 지원

##### 분야별 ODA 규모 추이

(승인 기준,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회 인프라	1,247	1,588	2,012	2,438	2,233	2,931	3,034
경제 인프라	249	164	364	430	833	643	716
농업	242	159	128	187	127	171	665
공업 등 기타생산부문	27	34	72	67	71	22	22
생활품 및 프로그램원조	124	272	132	152	175	395	571
채무재조정	784	1,596	3,220	2,068	3,761	3,897	1,735
기타	557	930	1,276	1,657	1,662	1,885	1,721
총계	3,230	4,743	7,204	6,999	8,862	9,944	8,464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07년 양자 간 원조에서 사회 인프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8%(U\$3,034백만)로서 가장 크며, 그 중 교육(Education) 분야(U\$1,929백만) 및 수자원·위생 분야(U\$391백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교육 부문에서는 **Dakar Declaration\*** 등 국제적 합의들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 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Dakar Declaration : 2000년 4월 Dakar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실천을 강조
  
- '07년 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원조는 약 8.4%에 불과하지만, '08년 2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아프리카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및 경제적 부문에 주로 쓰이는 차관이 증가하는 추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통, 에너지, 금융활동 등으로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는 특히 개발의 한 요소로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어권 국가 및 지역(Francophone countries and regions)에 사회적 통합 및 경제적 진보 달성에 필요한 불어 교육 및 방송, 정보통신기술 전수 등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원조를 활발히 전개

#### 마. 양자간 원조의 소득그룹별 분배

##### '07년 소득그룹별 ODA 규모

(총지출 기준, 백만 달러)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미분류	합계
무상원조	1,541	1,084	2,241	759	1,065	6,690
유상원조	89	221	397	296	-	1,003
합 계	1,631 (21.2%)	1,305 (17.0%)	2,638 (34.3%)	1,054 (13.7%)	1,065 (13.8%)	7,693 (100%)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07년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LMIC)에 양자간 ODA의 34.3%, 최빈국(LDC)에는 21.2%가 지원되었으며, 무상원조 중 최빈국 비중은 23.0%로 DAC 평균(26.7%)보다 낮음

※ 우리나라 '07년 무상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 : 최빈국(18.0%), 기타저소득국(16.3%), 하위중소득국(44.5%), 상위중소득국(4.0%)

- 유상원조는 차관의 특성상 최빈국(8.9%) 보다 하위중소득국(39.6%) 및 상위중소득국(29.5%)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07년 유상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 : 최빈국(35.3%), 기타저소득국(8.8%), 하위중소득국(54.0%), 상위중소득국(2.0%)

## 바. Tied Status of ODA

### Tied Status of ODA 추이

(승인 기준,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untied	1,312 (68.0)	1,178 (66.6)	2,708 (91.5)	4,666 (93.1)	4,041 (94.2)	5,861 (94.7)	6,494 (95.6)	4,822 (92.6)
tied	618 (32.0)	590 (33.4)	251 (8.5)	347 (6.9)	250 (5.8)	328 (5.3)	302 (4.4)	387 (7.4)
Total	1,929	1,768	2,959	5,013	4,291	6,189	6,797	5,209

자료 : OECD DAC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프랑스의 Tied 비율은 '92년 Helsinki package 이후 '93년 68.5%에서 '94년 49.1%로 감소한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01년 33.4%에서 '02년 8.5%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01년 DAC의 최빈국에 대한 Untied 권고안이 확정된 후, 프랑스의 Untied 원조 확대를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CICID는 수원국이나 원조 규모에 상관없이 AFD의 모든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Untied화를 인가하였으며, 이에 AFD는 '02년부터 국제수지, 채무탕감, 부분별 프로그램원조, 프로젝트 원조 등에 Untied 추진

- '07년 Tied 비율은 '06년 4.4%에서 7.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채무탕감 규모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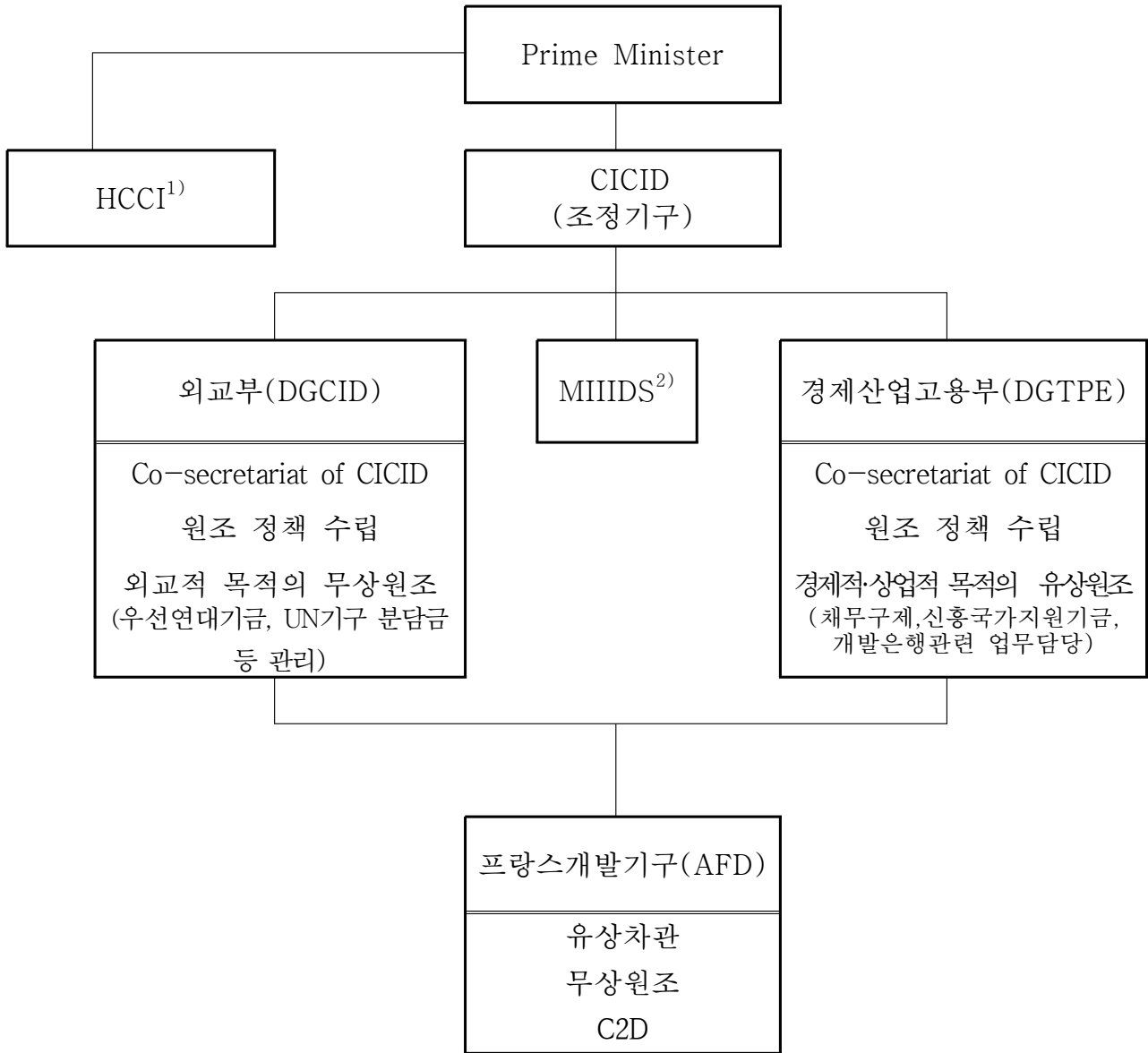
※ 채무탕감 규모 추이(총지출 기준, US\$백만) : 3,498('05년) → 3,683('06년) → 1,683('07년)

붙 임 : 1. 프랑스의 원조 체계 조직 현황  
2. 우선연대국가군(ZSP) 현황

자 료 : 1. OECD DAC Peer Review Report ; France 2008  
2. France Memorandum 2008 [DCD-DAC-AR(2009)1-08-FRE]  
3. AFD 웹사이트 ([www.afd.fr](http://www.afd.fr))

작 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mailto:suhmoongy@koreaexim.go.kr)

<붙임 1> 프랑스의 원조 체계 조직 현황



- 주 : 1) High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조정기능을 담당)
- 2) Ministry of Immigration,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Co-operation Development



<붙임 2> 우선연대국가군(ZSP) 현황 (총 55개국)

지역	국가명	국가수
North Africa	Algeria, Morocco, Tunisia	3
Sub-Saharan Africa and Indian Ocean	Angola,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ô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ambia, Guinea, Guinea-Bissau, Kenya, Liberia, Madagascar, Mali, Mauritania,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South Africa, Sudan, Tanzania, Togo, Uganda, Zimbabwe	40
Latin America	Surinam	1
Asia	Cambodia, Laos, Vietnam.	3
Caribbea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3
Pacific	Vanuatu	1
Middle East	Lebanon, Palestinian Territories, Yemen, Afghanistan	4

ODA 자료 3

## 2008년 OECD DAC의 ODA 통계(잠정치)의 주요 내용

### 1.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2008년 DAC 회원국의 ODA 잠정치 규모(순지출기준)는 총 1,198억 달러로 전년(1,035억 달러)대비 10.2% 증가(실질가치 기준)

○ 최근 양자 간 프로그램성 원조\*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바, '07년에 비해 '08년 125%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여국들의 core aid programme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의미

\* 프로그램성 원조 :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등

○ 2008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ODA 규모는 260억 달러이며, 그 중 225억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배분됨

- 채무탕감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ODA는 전년대비 각각 10.6% 및 10% 증가(실질가치 기준)

○ ODA/GNI 비율은 0.30%로 전년대비 0.02% 포인트 증가

### 주요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단위: 억 달러, 순지출·명목가치 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잠정치)	
	ODA	ODA/GNI	ODA	ODA/GNI
미 국	218	0.16	260	0.18
일 본	77	0.17	94	0.18
E U (15개국)	615	0.39	702	0.42
영 국	98	0.35	114	0.43
프 랑 스	99	0.38	110	0.39
독 일	123	0.37	139	0.38
네 델 란 드	62	0.81	70	0.80
스 웨 덴	43	0.93	47	0.98
스 페 인	51	0.37	67	0.43
DAC 전체	1,035	0.28	1,198	0.30

- 2008년 최대 공여국(순지출기준)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순이며, UN이 제시한 목표 ODA/GNI 비율(0.7%)을 달성한 공여국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총 5개국임
- 미국의 2008년 ODA는 2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6.8% 증가(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16%에서 0.18%로 증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5억 달러로 전년대비 38.3% 증가(실질가치 기준)
  -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69억 달러로 전년대비 40.5% 증가(실질가치 기준)
  - 인도적 지원은 구호식량원조(relief food aid)의 증가로 전년대비 42.5% 증가한 44억 달러를 기록함(실질가치 기준)
- 일본의 2008년 ODA는 94억 달러로 전년대비 8.2% 증가(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17%에서 0.18%로 증가
  - 이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ODA 규모는 2005~2006년 채무탕감 증가로 인한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8년 그 추세가 역전됨
- EU DAC 회원국(15개국)의 2008년 ODA는 702억 달러로 전년대비 8.6% 증가(실질가치 기준<sup>31</sup>), ODA/GNI 비율은 0.39%에서 0.42%로 증가
  - 그리스의 ODA는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간 원조의 증가 및 EC와 IDA에 대한 다자간 원조 증가로 전년대비 26.9% 증가
  - 영국은 일반적 원조 규모 확대 노력에 따라 전년대비 24.1% 증가
  - 포르투갈의 ODA는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간 원조 증가로 전년대비 21.1% 증가
  - 오스트리아는 채무탕감의 감소로 인해 ODA 규모가 전년대비 14.0% 감소
- 주요 공여국들이 201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ODA 증액 목표(2004년 기준 1,300억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ODA 증액이 필요함. forward spending plan 서베이 결과 2008~2010년에 원조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 forward spending plan보다 적어도 100~15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31) 2007년 EU DAC 회원국(15개국)의 명목가치 기준 ODA는 702억 달러이며, 실질가치 기준 ODA는 668억 달러임.

## 2. 우리나라 ODA 지원실적

□ 2008년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순지출기준)는 총 U\$797.23백만으로 전년(U\$699.06백만)대비 14.04% 증가

○ 양자간 원조는 전년대비(U\$493.47백만) 5.33% 증가한 U\$519.75백만을 기록

- 무상원조는 U\$349.20백만으로 전년대비(U\$361.28백만) 3.34% 감소함.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은 U\$195.66백만으로 무상원조의 56.03%를 차지했으며, 최근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술협력(U\$ 백만): 53.83('04)→80.16('05)→116.78('06)→167.03('07)→195.66('08)

- 유상원조(EDCF)는 U\$170.55백만으로 전년대비(U\$132.19백만) 29.02% 증가함.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26.78%에서 32.81%로 증가하였으며, '08년 약정(승인)액은 U\$961.26백만으로 전년(U\$584.20백만) 대비 64.54% 증가하여, 향후 EDCF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1> 2008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현황

(단위: U\$백만, 순지출기준)

구 성 항 목	2007년	2008년	증감율(%)	비중(%)
ODA (A+B)	699.06	797.23	14.04	100
양자간 ODA (A)	493.47	519.75	5.33	65.19
무상원조	361.28	349.20	-3.34	양자 중: 67.19
유상원조(EDCF)	132.19	170.55	29.02	양자 중: 32.81
다자간 ODA (B)	205.59	277.48	34.97	34.81
ODA(총지출)	734.03	836.67	13.98	-
ODA/GNI(%)	0.072	0.086	0.014%p	-

○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U\$205.59백만) 34.97% 증가한 U\$277.48백만을 기록

- '08년 중 IDB에 대한 출연 증가(U\$70.00백만)가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인

□ 양자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

-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16.27%** 증가한 **U\$140.65**백만을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27.06%**를 차지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36.55%** 증가한 **U\$95.82**백만을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18.44%**를 차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40.01%** 증가한 **U\$73.59**백만
-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U\$9.78**백만
  - 이라크 지원(U\$백만): 149.54('05)→57.09('06)→53.62('07)→9.78('08)

□ 총지출기준 ODA 지원규모

- 총지출기준 ODA 지원규모는 **U\$836.67**백만으로 전년(U\$734.03백만)대비 **13.98%** 증가

□ ODA/GNI 비율

- ODA/GNI 비율은 0.086%으로, 전년(0.072%) 대비 0.014%p 증가

붙임 :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기준)

자료 : 'Development Aid at its highest level ever in 2008' (OECD/DAC 보도자료), 2009.3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mailto:suhmoongy@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2008년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명	2007년도		2008년도(잠정)	
	ODA	ODA/GNI	ODA	ODA/GNI
미 국	21,787	0.16	26,008	0.18
독 일	12,291	0.37	13,910	0.38
영 국	9,849	0.35	11,409	0.43
프 랑 스	9,884	0.38	10,957	0.39
일 본	7,679	0.17	9,362	0.18
네 덜 란 드	6,224	0.81	6,993	0.80
스 페 인	5,140	0.37	6,686	0.43
스 웨 덴	4,339	0.93	4,730	0.98
캐 나 다	4,080	0.29	4,725	0.32
이 탈 리 아	3,971	0.19	4,444	0.20
노 르 웨 이	3,728	0.95	3,967	0.88
호 주	2,669	0.32	3,166	0.34
덴 마 크	2,562	0.81	2,800	0.82
벨 기 에	1,953	0.43	2,381	0.47
스 위 스	1,685	0.37	2,016	0.41
오스트리아	1,808	0.50	1,681	0.42
아 일 란 드	1,192	0.55	1,325	0.58
핀 란 드	981	0.39	1,139	0.43
그 리 스	501	0.16	693	0.20
포 르 투 갈	471	0.22	614	0.27
룩셈부르크	376	0.91	409	0.92
뉴 질 란 드	320	0.27	346	0.30
<b>DAC 평균</b>	<b>4,704</b>	<b>0.28</b>	<b>5,444</b>	<b>0.30</b>
<b>우리 나라</b>	<b>696</b>	<b>0.07</b>	<b>797</b>	<b>0.09</b>

## 2009년 1/4분기 EDCF 소식

### 1. 2009년 1/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 보스니아 병원현대화 사업(2차)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보스니아 연방 재무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합 보건부 및 스프스카 공화국의 보건사회복지부)
- 총 사업비용 : 62.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5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전국 소재 27개 국립 임상센터 및 종합병원에 진단장비 및 일반 의료장비 공급
- 사업개요
  - 본 2차 사업은 첨단 의료장비 공급을 통해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27개 병원에 진단장비 및 일반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임
  - '07. 10월 보스니아 정부의 차관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08. 7월 정부지원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09. 2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되었음

#### □ 인도네시아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보건부)
- 총 사업비용 : 36.6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8.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응급센터 및 심장센터용 의료기자재 공급, 컨설팅 서비스, 교육 훈련, 유지보수 등



○ 사 업 개 요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병원 현대화 프로그램(Hospital Modernization Program)」을 통해 28개 공공병원의 의료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정부 예산 부족으로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아담말릭 병원은 A등급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서비스는 최저수준(1 star급)으로서 응급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은 아담말릭 병원의 시설 및 의료 기자재 확충을 통해 진찰 및 치료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08. 4월 EDCF 차관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본 사업은 아담말릭 병원의 개선을 통해 북부 수마트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08. 11월 정부 지원방침 결정, '09. 3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되었음

□ 인도네시아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보건부)
- 총 사업비용 : 36.6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8.9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응급센터 및 심장센터용 의료기자재 공급,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
- 사 업 개 요
  - 마나도 칸도우병원의 치료대상 질병 중 고혈압(9.5%), 심부전(6.2%) 등 심혈관 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큰 편이나,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예산 부족으로 고급 의료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 본 사업은 마나도의 대학 부속병원이자 종합병원인 칸도우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을 통해 마나도 지역의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08. 11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 '09. 3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되었음

□ 한국-예멘 고등 기술훈련소 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예멘 기획국제협력부 (예멘 직업훈련교육부)
- 총 사업비용 : 19.7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5.4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사나 소재 직업훈련원에 대한 교육 기자재 공급 및 교재 개발, 교사 연수, 전문가 파견 등

○ 사업 개요

- 예멘은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노동력의 공급증가로 일자리 창출과 실업을 감축이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멘 정부는 기술 및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본 사업은 직업훈련교육 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07. 11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된 후, '09. 3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됨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9. 3. 31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6년	3,523	1,361	19,238
2007년	5,542	1,553	21,169
2008년	12,373	2,371	23,060
2009년(3월말)	-	275	23,768

\* 2009. 3. 31자 환율 (₩1,411.98/U\$)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5개국 200개 사업, 4조 9,938억 원 ('09 : 승인실적 없음)
- 집행 : 39개국 152개 사업, 2조 378억 원 ('09 : 16개국 27개 사업, 275억 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9. 3)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34,113	68.3%	13,611	66.8%
유 럽	4,261	8.5%	2,616	12.8%
아 프 리 카	6,571	13.2%	2,258	11.1%
중 남 미	2,537	5.1%	1,241	6.1%
중 동	2,274	4.6%	569	2.8%
대 양 주	180	0.4%	82	0.4%
<b>합 계</b>	<b>49,938</b>	<b>100%</b>	<b>20,378</b>	<b>100%</b>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14,382	28.8%	5,680	27.9%
통 신	5,027	10.1%	3,278	16.1%
에 너 지	5,391	10.8%	2,184	10.7%
수자원, 위생	9,269	18.6%	2,460	12.1%
환 경 보 호	246	0.5%	148	0.7%
보 건	5,692	11.4%	1,945	9.5%
교 육	4,169	8.3%	1,453	7.1%
공 공 행 정	2,348	4.7%	1,583	7.8%
농 수 입	1,984	4.0%	979	4.8%
기 타	1,431	2.9%	668	3.3%
<b>합 계</b>	<b>49,938</b>	<b>100%</b>	<b>20,378</b>	<b>100%</b>